

C2005-21 / 2005. 9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김정호 김태곤 이병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5-21 / 2005. 9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선임연구위원 김 정 호
연구위원 김 태 곤
전문연구원 이 병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연구자	담당분야
선임연구위원 김 정 호	총괄, 개정 방안
연구위원 김 태 곤	외국 사례
전문연구원 이 병 훈	자료 분석

머 리 말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과 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9년 2월 5일 제정되었다. 그 동안 기본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학계 그리고 농업인단체 등에서 간헐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세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여건은 대외적으로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DDA 협상과 쌀 관세화유예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FTA)가 진전되고, 대내적으로는 농업인 소득안정과 삶의질 향상, 농촌 지역개발, 지방농정 등이 크게 중시되면서 농정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2월에 향후 10년을 전망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3년까지 총 119 조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마련하였다.

농업기본법은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시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며, 또한 농업관련 법률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농업의 헌법’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가 중장기적인 농정시책을 수립할 때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검토하여 왔으며, 따라서 이 연구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농정 틀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보고서가 관련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2005.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대행 허길행

요 약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

- 「농업·농촌기본법」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 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그 동안 세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그 동안 대외적으로 쌀 관세화유예 협상,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진행되고, 대내적으로는 농가소득 안정,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 개발 등이 중시되면서 농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후 10년 계획의 「농업·농촌종합대책」('04.2.25)이 수립되는 등 중장기 농정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농정제도의 모범으로 성격 재정립

-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은 구 농업기본법(1967년 제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년 제정)을 통합하면서 일부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제정되어 법률의 체계나 성격이 조잡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방향으로서 먼저 기본법의 성격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첫째, 농업관련 법률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정의 원칙과 중장기 방향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추상적인 이념이나 방향 제시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법에 근거하여 하위법이 제정되고, 아울러 농정분야의 제반 법률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 둘째, 선언적 규정과 집행적 규정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농업·농

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정의 이념과 방향 등은 선언적 규정일 수 밖에 없으나, 개별 시책에 대해서는 집행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집행적 규정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하위 법률의 무질서한 개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 셋째, 법률이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은 경제입법으로서 각종 시책이 탄력성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법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장기 목표만이 아니라 중기적인 시책을 규정하여 필요 시 상황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 농업의 범위 등 개념과 기본 방향은 보완될 필요

- 기본법 제정 당시에 소홀히 다루었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생산업과 축산업으로 규정하되 관련산업(농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 농업 관련 서비스, 농촌관광)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농업인과 그 가족경영체인 ‘농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농업경영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부여해야 한다.
- 국가와 지자체 등 농정 주체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는 식량안보와 다원적기능, 농가소득 안정, 식품 안전성 확보, 시장지향적 제도정비 등에 주력하고, 지자체는 지역농업 진흥, 농촌지역 개발, 주민복지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다. 또한 농정 추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농산물 공급조절, 시장개척, 수요개발 등의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은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개정 요구이기도 하다. 현행 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식량자급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량자급률은 국가적 목표로서 더욱 명

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을 포함한 식량자급계획의 수립, 식량자급률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 체계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여건 변화에 따른 통일대비 농정도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본법에서 통일대비 조사연구, 농산물의 민족내부거래 등을 규정하는 정도이지만, 앞으로 북한과의 농업협력을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등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식품·농촌정책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 세계농정이 농업정책에서 식료정책과 농촌정책으로 중심 이동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농산물시장의 개방 진전에 대응하여 소비정책 및 식품산업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농식품 소비에 관한 시책,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등이 실효성 있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고양하고 농촌지역사회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촌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태·환경·경관 등 농촌의 가치 재발견, 귀농이나 도시민 이주 등 인구 유입 대책, 농촌지역의 혼주화에 대응한 공간 정비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농업의 다양성과 지방농정의 창의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농업 및 지방농정 강화를 위한 원칙 제시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업인력의 여성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 고령화 진전에 따른 농촌형 사회복지 체계의 구축 등도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모법적 성격의 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Revised Direction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Basic 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raw out revised direction of 'Agriculture & Rural Communities Basic Act'. This act was established in 1999 in order to serve agriculture · rural · farm by guarding and enforcing Laws of being related with agricultural sectors and to keep up with the pace of growth and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But recently this act has partially amended over three times and nevertheless, it has been suggested that it should be reform to support the agricultural policy direction und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ithin to enhance practice on 'Integrated Agriculture & Rural Policy'.

In order to have the trust of the embodiment of act, following three main conditions is necessary. First of all, character as a parent law must be realigned. Act might be the long-term of agricultural direction, also a compulsory execution. Therefore, act will provide a basic information and a criterion regarding major policies, activities and related laws. Secondly, basic direction must be supplemented. In order to turn over a new transformed features, overall category of concepts and direction should be variously amended. Finally, food & rural policy must be reconsidered thoroughly. The world agriculture policy is being changed into food & rural policy swiftly. In order to cope with this change, reforming articles of food & rural based on the reality might be absolutely necessary.

Researcher: Jeong-Ho Kim, Tae-gon Kim, Byoung-Hoon Lee

e-mail Address: jhkim@krei.re.kr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및 논의 동향	3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7
제2장 농업·농촌기본법의 추진 경과	11
1. 기본법 입법의 추진 경과	11
2. 농업·농촌기본법의 주요 내용	17
3.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경과	24
제3장 외국의 농업기본법 동향	27
1. 프랑스의 농업기본법	27
2. 일본의 농업기본법	33
3. 미국의 농업법	43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49
제4장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	52
1. 기본법 개정에 관한 각계 의견	52
2. 농정 여건 변화와 농업·농촌종합대책	76

제5장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방향	83
1. 농업·농촌기본법의 성격 재정립	83
2.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	92
부록 1: 농업·농촌기본법령 전문	103
부록 2: 프랑스 농업법전 및 기본법 요지	142
부록 2: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전문	156
참 고 문 헌	170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경과	24
----------------------------	----

제 3 장

표 3-1. 2002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46
-------------------------------	----

표 3-2. 세계 농업과 농정의 흐름	50
----------------------------	----

제 4 장

표 4-1.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요구조사 결과	68
----------------------------------	----

제 5 장

표 5-1. 우리나라의 기본법 제정 내역	85
------------------------------	----

그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1. 농업·농촌기본법의 체계 22

그림 2-2. 농업·농촌기본법의 구성 23

제 5 장

그림 5-1. 농업·농촌기본법의 주요 하위법 88

그림 5-2.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의 검토 절차 92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농업기본법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본 시책을 제시하는 법률이며, 또한 농업관련 법률의 모법이 되기 때문에 ‘농업의 헌법’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중장기적인 농정시책을 수립할 때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기본법을 검토하여 왔다.
- 우리나라는 농정관련 제도가 정비되던 시기인 1960년대에 「농업기본법」(법률 제1871호, 1967.1.16)을 제정하였으나, 본래 선언적 법률로 제정되어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 후 1990년대 들어 정부는 농정기조를 개방농정으로 전환하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적 성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법률 제4228호, 1990.4.7)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에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국민의정부)는 농발법의 일부 규정을 발췌하고 농업기본법을 통폐합하는 형태의 대체입법으로 「농업·농촌기본법」(법률 제5758호, 1999.2.5)을 제정하였다.

-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산물 시장개방의 진전과 21세기 새천년 시대에 대비하는 중장기 농정 방향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정부가 1998년에 수립한 『농업·농촌발전대책』의 내용을 근간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규정을 보완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 및 농정을 둘러싼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 정부(참여정부)가 2013년까지 중장기 대책으로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2004.2.5)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변화된 농정 여건을 반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최근의 칠레와의 FTA 협정 체결 및 다른 국가와의 무역자유화 협상 진전, WTO 쌀 관세화유예 협상의 타결과 DDA 협상의 진전 등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농정의 기본틀 및 제도적 장치를 종합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더욱이 농업·농촌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기존의 농업기본법(1967)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을 통합하는 형식으로 추진됨으로써 법 체계상으로도 불합리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규정은 다른 조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상세히 규정되어 별도의 하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기본법 입법의 동향을 보면 집행적인 규정을 강화하는 경향으로, 농업·농촌기본법도 선언적 규정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 이 연구는 대내외적인 농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정 틀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논의 동향

- 농업기본법(1967.1.16, 법률 1871호)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사문화되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기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1970년대의 농지법 논쟁에서도 농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가족농과 협업농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농업기본법은 대부분이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법 개정의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 농업기본법이 사문화된 이유는 국내 농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일본의 법률을 모방하였으며, 그나마 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시행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자료(농업농촌기본법 분석, 2001-09-05)에 의하면, 농업기본법의 성격 및 실패 원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농업기본법을 빌려 그대로 적용하였다.
 - 농업기본법의 방향에 따른 시책의 구체화는 별도의 입법·예산조치에 위임되고, 농업기본법에는 농업분야에서의 각종 시책의 내용을 큰 틀로서 규정하고 유도하였다.
 - 농업기본법에 표시된 이념이나 방침은 추상적인 것이고, 개별 법률이나 시책에 대해서 법적 규범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책내용이나 운영방침에 관해서는 상당히 폭넓은 선택이 인정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책이 농업기본법에 의해서 표시된 방향으로 유도되는가는 오로지 정부의 의지의 문제가 된다.
 - 농업기본법의 법적 성격은 농업정책의 이념, 목표, 방향이 선언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항구법으로 인식되었기 장기에 걸친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는 목표,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머물고, 또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 결론적으로 1967년 농업기본법은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 권리, 의무를 명문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법률이라고도 할 수 없다.
- 1990년대 들어 농정개혁이 시도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1986년에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에 대응하여 정부는 개방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농정 방향을 재정립하기에 이르렀다.
 - 당시 농림수산부는 1987년에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농정의 대전환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여 1989년 4월에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 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화에 착수하여 1990년 4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공포하였다.
 -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농업기본법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성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21세기를 향한 중장기 농정 틀로서 새로운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새로운 농업기본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1998년에 농림부는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검토하였으며, 농림부의 법안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농업·농촌기본법안에 대하여 1998년 8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기본법의 성격을 시행법 형태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 박진도(1998, 농어촌사회연구소 심포지움)는 농업기본법이 사문화되고 실제 농정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이 법이 선언법으로 구체적 시책이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농업농촌기본법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시행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배민식(1998, 국회입법조사 현안분석자료)은 농업·농촌기본법이 전혀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선언적 성격의 기본법 형태를 취할 것이

아니라, 국내 농업의 상황과 선진국들의 농정 흐름을 고려하여 중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농업·농촌기본법은 1998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어 1999년 2월에 제정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농업·농촌기본법은 종전의 농업기본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합하여 21세기 농업·농촌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농업·농촌발전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법으로서 농업분야 개별법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기능하도록 제정되었다. 농업·농촌기본법은 법 체계상으로는 1967년의 농업기본법을 대체한 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농업기본법 시행 이후에 개별법의 제정에 의해 전개되어 온 농업정책의 방향, 특히 1990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본격화된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1998년에 수립한 「농업·농촌발전대책」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고자 한 것이다.
- 1999년 2월에 「농업·농촌기본법」이 공포된 후 농업과 농업인의 개념에 관한 논란을 비롯하여 기본법의 실효성 및 법률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됨. 대표적으로 농업법학회(대표 황적인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본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2002년 참여정부 출범 후 10년 계획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수립되는 등 중장기 농정 방향이 재정립됨에 따라 정부는 물론 학계에서도 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회와 농업인단체는 현제도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을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현행 기본법이 농업생산이나 구조정책을 중시하는 반면에 식품과 소비자, 농촌지역 및 농업인 복지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농업·농촌기본법에 관한 연구로서 이영기(2003)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나타난 농정 연구”를 통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 담겨진 농정 목표와 방향의 특징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첫째,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을 “식량의 안정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농정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농업기본법과는 달리 농산물의 증산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 수행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농산물 내지 식량의 증산정책은 배제하고 있다.
 - 둘째,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농촌이라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농촌지역정책을 농정의 주요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농정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농촌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농정의 기본 방향의 하나로 규정한다.
 - 셋째,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구 농업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도·농간 소득 균형 목표가 제시되고 있는 바, 이것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농업구조개혁이 중심이 됐던 1990년대의 농정에선 거의 무시되었던 정책목표가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 넷째,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농업이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며 농업인은 농업 생산의 주체로서 소비자에게 양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또 농업 생산성을 높여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해야 하는 책무를 지는 존재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정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 내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강조하고 있다.
 - 다섯째,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정 수립·시행의 기본 원칙으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견 모순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농업부문에 시장경쟁주의를 강화하고 정부의 개입 방식을 가능한 한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여섯째,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구 농업기본법과 달리 식량안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농정의 기본 방향의 하나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적정한 식량자급 목표를 설정·유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에서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내용에 관해서는 거의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농업의 식량 자급력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한 식량 증산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 일곱째,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경영구조 개선에 의한 가격경쟁력 향상만이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꾀하는 것을 기본 방향의 하나로 한다.
- 마지막으로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구 농업기본법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농업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는 것과 통일을 대비한 농정을 실시하는 것을 각각 농정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즉, 제2장 농업·농촌기본법의 추진 경과, 제3장 외국의 농업기본법과 시사점, 제4장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 제5장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 등이다.

- 제2장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정리한다. 1967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과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략적인 배경과 추진 경과를 정리하고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농업기본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정리한다. 그리고 1999년에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분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한다.
- 제3장에서는 외국의 농업기본법에 대한 최근의 동향과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외국의 사례로는 일찍이 1960년에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여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도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프랑스, 우리나라 농업기본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한시적이고 실천적 농업법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를 세 나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 제4장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을 검토한다. 먼저, 국회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금년에 각계의 개정 소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부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이 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법 제정 이후의 농업·농촌과 농정을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 변화를 정리한다. 또한 농업·농촌기본법이 중장기 농정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중장기 농정대책과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한다.
- 제5장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농업·농촌기본법의 체계와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제안한다. 그리고 본론으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특히 농업·농촌기본법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이에 근거

하여 농업, 농업인, 농촌 등 농정의 기본적 개념, 농정의 기본이념과 시책 방향, 분야별 추진시책 등의 순서로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의 법 체계 정비 방안으로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하위법 체계의 정비 방안을 제안한다.

3.2.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농업·농촌기본법과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시각에서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법 개정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특히 농림부는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부내를 비롯하여 유관단체·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수요를 파악하였는데, 이 집계 결과를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책협의회 및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다.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위한 주요 회의는 다음과 같다.
 - 농림부 농업·농촌기본법 전문가협의회: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장태평)을 위원장으로 농업구조정책과장(김성민), 농업인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탁명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용두,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홍준근),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정화), 생산자단체(농협 조사연구소 정책팀장 전찬익), 학계(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태호),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연구위원 김태곤, 농정연구센터 부소장 황수철, 지역아카데미 대표 오현석) 등이 참여하여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 대통령자문 농어업특위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소위원회: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김경량 교수를 위원장으로 생산자단체(농협 상무 김재복, 산림조합 지도상무 김동욱), 농업인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탁명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박민웅,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우정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최옥주), 소비자단체(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자혜, 한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정주), 학계(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 김동환, 협성대 도시지역학부 교수 윤원근, 농협대학 교수 박민선),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농정연구센터 부소장 황수철), 법률가(김병문 변호사), 관계부처(농림부 구조정책국장 장태평,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장 조은기) 등이 참여하여 2005년 6월에 준비 모임을 개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이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대통령자문 농어업특위와 공동으로 2005년 7월 5일 농협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서 김재복 농협중앙회 상무, 문명수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 박노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박진도 충남대학교 교수, 설광연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기호 변호사, 신동환 KBS플러스 대표, 이정주 한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등이 지정토론을 하였으며, 그 밖에 방청객 중에서 10여명의 청중토론이 이어져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 2 장

농업·농촌기본법의 추진 경과

- 이 장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이 어떻게 제정되었으며,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그 후 어떠한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기본법 입법의 추진 경과

1.1. 1967년 농업기본법 제정

- 농지개혁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1960년대 들어 정부는 농업관련 제도의 정비에 착수하였으며, 농정의 근간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이 가장 큰 이슈였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몇몇 국가에서 가족농의 자립을 근간으로 하는 농업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독일은 1955년에, 프랑스는 1960년에, 일본은 1961년에 각각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1962년에 당시 농림부 규정으로 「농업구조개선심의위원

회」를 설치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 농촌사회, 농촌생활·문화 등 농촌사회 구조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각국의 정책을 수집하면서 일본의 농업기본법을 검토하였고, 이를 원용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기본법을 성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나라 「농업기본법」(1967.1.16, 법률 1871호)은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임에 비추어 그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제약을 보정(補整)하여 농업경영을 근대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식량 및 기타 농산물의 증산을 기하고, 농산물의 생산·가격·유통구조의 개선, 농가소득의 증진, 타산업 종사자와의 소득의 균형을 실현하여 농촌의 생활 및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정부의 기본시책의 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농업기본법」은 총칙, 농업생산, 가격과 유통, 농업구조의 개선, 농촌복지와 문화향상, 농업행정기구와 농업단체, 농업정책심의회 등 7장으로 나뉘어 전문 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부의 시책),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4조(농업시책에 관한 문서의 제출), 제5조(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6조(산업관측), 제7조(재정 및 금융조치), 제8조(조세감면조치)
 - 제2장 농업생산
 - 제9조(농업생산에 관한 시책), 제10조(농업재해에 관한 시책), 제11조(산업자재의 공급), 제12조(기술 및 지도사업의 확충)
 - 제3장 가격과 유통
 - 제13조(농산물가격의 안정과 적정), 제14조(농산물 유통의 개선), 제15조(수입조절과 수출의 진흥), 제16조(식량소비구조의 개선)
 - 제4장 농업구조의 개선
 - 제17조(자립가족농의 육성), 제18조(기업농·협업농의 조장), 제

- 19조(농업경영의 세분화 방지), 제20조(취업기회의 증대), 제21조(생산기반의 확충과 정비), 제22조(축산대책), 제23조(산지대책)
 - 제5장 농촌복지와 문화향상
 - 제24조(농촌의 복지향상), 제25조(농촌문화의 향상)
 - 제6장 농업행정기구와 농업단체
 - 제26조(농업행정기구의 정비 강화), 제27조(농업단체의 개선)
 - 제7장 농업정책심의회
 - 제28조(설치), 제29조(조직), 제30조(예산조치)
- 1967년 제정된 농업기본법은 시행령을 수반하지 않는 선언적인 성격의 입법으로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서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규정 등의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운영되지 않는 사문화된 법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해서는 법 제3~5조에서 정부는 매년 농업의 생산·경영·가격·소득 및 국민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시책을 명시한 문서 및 농업동향을 농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매년 농업시책에 관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2.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농업은 개방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1986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가 출범하였으며, 1989년에는 GATT/BOP 조항의 졸업으로 인해 총 243개 품목(실 품목 142개)의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가격지지 등 종래의 정책수단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책도 종래의 증산 위주의 농정에서 농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꿈으로써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당시 농림수산부는 1987년에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농정의 대전환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여 1989년 4월에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화에 착수하여, 특히 전업농과 농업법인 등의 인력육성, 농지제도, 농업진흥지역, 농지관리기금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1990년 4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에 의하여 19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일명 42조사업, 사업기간 1992~2001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4.7, 법률 제4228호)은 제1조의 목적에서 농림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개념 정의, 농림어업의 구조개선, 농어촌공업 육성 등 농외소득원 개발, 농어촌정주권 개발 등 생활환경 개선,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농어촌발전기금 운용 등 9장 78조와 부칙으로 구성된다.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제2장 농수산업의 구조개선
 - 제3조(전업농어가의 육성), 제4조(농어민후계자의 육성), 제5조

(농업기계화의 촉진), 제6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7조(위탁영농회사의 육성), 제8조(농어가의 전업지원), 제9조(경영자산을 이전한 농어가에 대한 지원), 제10조(농수산물특정연구사업의 실시), 제11조(어업구조개선의 촉진 등)

- 제3장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제1절 수급안정: 제12조(농업관측과 생산조정), 제13조(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4조(국내산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제15조(국내산 농수산물의 가공지원)

제2절 농수산물의 수출입: 제16조(농수산물의 수출촉진), 제17조(수입자유화 예시), 제18조(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 제19조(심의회 설치)

- 제4장 농외소득원의 개발촉진

제20조(농외소득원의 개발), 제21조(농외소득증대계획의 수립), 제22조(농공단지의 개발촉진), 제2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24조(농공단지안의 농업외의 취업의 등록 및 영리), 제25조(농업외의 취업의 훈련지원 등), 제26조(기술 및 경영지도), 제27조(생산제품의 판매지원), 제28조(농어촌환경의 보전), 제29조(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과 육성), 제30조(농어촌휴양지의 개발), 제31조(보고)

- 제5장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제32조(농어촌 정주생활권의 개발), 제33조(정주생활권의 개발대상지역), 제34조(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의 수립), 제3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36조(사업의 시행), 제37조(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제38조(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 제39조(기획기술지원단의 운영)

- 제6장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등

제4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41조(진흥지역의 지정대상), 제42조(진흥지역의 지정절차), 제42조(진흥지역 등의 변경), 제44조(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45조(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

- 자의 확대), 제46조(농어촌용수계획 등), 제47조(농지전용과 이용의 특례),
- 제7장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 제48조(농어촌발전 기본방침), 제49조(도 농어촌발전계획), 제50조(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제51조(기본방침 등의 변경), 제52조(농어촌발전심의회)
 - 제8장 농어촌발전기금
 - 제53조(기금의 설치), 제53조의 2(계정의 구분), 제54조(기금의 조성), 제55조(기금사업의 내용), 제56조(기금의 차입), 제57조(채권의 발행), 제58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9조(기금의 용도), 제60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제61조(기금운용계획), 제62조(기금의 회계기구), 제63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64조(용자금의 회수), 제65조(결산보고), 제66조(감독과 명령)
 - 제9장 보칙
 - 제67조(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제68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69조(토지수용), 제70조(허가취소 등), 제71조(보고 및 검사), 제72조(조세의 감면), 제73조(측량·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위임 등),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양벌규정), 제78조(과태료)
 - 부칙
 -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농어민후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부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절대농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3.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 1993년 12월에 UR 협상이 타결되었다. 당시 농촌사회는 개방화에 대한 불안이 팽배하였고,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2월에 민간

자문기구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정개혁 방안을 검토하게 하였고, 동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그 해 6월에 정부는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1992년부터 실시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2004년까지 10년간의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농정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당시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농정제도 개혁의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 농업기본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농업·농촌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새로운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법화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1998년 2월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농림부는 그 해 3월에 ‘농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정 전반을 검토하였으며, 이 때 새로운 농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농림부는 1998년 6월 기본법 작업반을 구성하여 법안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농업인단체장과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수차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8월 13일 「농업·농촌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렇게 성안된 법률안은 그 해 1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절차에 따라 상임위 및 법사위 등에서의 논의를 거쳐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999년 2월 5일 공포되어 200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2. 농업·농촌기본법의 주요 내용

- 「농업·농촌기본법」(1999.2.5, 법률 제5758호)은 총칙, 기본방향, 농업구조개선,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추진 등 총 8장 4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 >

-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 제시(제2조)
 - 농업, 농업인, 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역할·기능 제시
- 용어 정의(제3조)
 -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 등의 개념 정립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발전·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
 - 농업인을 어엿한 경제주체로 파악,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 제2장 기본방향 >

- 농업시책의 기본원칙 선언(제5조)⇒농업의 공익적 기능 선언
 -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환경보전 등 농업의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규정(제6조)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정 식량자급 수준의 목표를 설정, 유지하고 적정재고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
- 농업구조개선,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시책의 근거 마련(제7, 8조)
 - 농업, 농업인, 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역할·기능 제시
- 환경친화적 농업육성 근거 마련(제9조)
 - 농업의 환경보전효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 등을 위한 환경친화적농업 육성을 기본시책으로 규정
- 통일에 대비한 농업정책 규정(제10조)
 - 남북한간의 농산물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 남북교류 확대를 촉진하고 농업분야 조화로운 통합을 위한 기초조사 등 실시

< 제3장 농업구조개선 >

- 가족농의 경영안정(제11조)
 - 농가의 특성 고려, 규모화·전문화·협동화 등 다양한 형태의 농가

경영 안정시책 규정

- 후계농업인, 전업농,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력 육성 및 생산자단체 등 농업관련단체의 육성·지원(제12조 내지 제16, 제18조)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제15, 16조)
 -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 경영체로서 성격 부여
- 농업인의 경영혁신과 자금지원의 효율화(제17조)
 - 농업인을 ‘경영인’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경영상담·자문(컨설팅) 등을 통한 경영혁신과 정책자금의 효율적 지원을 규정
- 농지보전 강화와 이용증진(제19조 내지 제21조, 제41조)
 - 농지는 식량공급·환경보전의 기반으로서 국가의 귀중한 자원으로 소중히 이용·보전하고,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국가에 의무 부여
 - 농촌투자재원 확보 차원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존치
- 농업기반정비 및 농업기계화 촉진(제22조, 제24조)
- 농업경영규모 적정화 및 유동화 촉진(제23조)
- 농업과학기술 진흥/농업기술개발사업 추진(제25조, 제2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R&D 지원, 농업기술개발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 벤처농업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제26조)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 농업분야 첨단과학기술의 개발과, 농업관련산업을 접목하여 벤처농업 육성·지원근거를 마련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제27조)
 - 농업 유전자원(GMO 등), 기술, 상표 등의 농업분야의 지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지역 특화산업 육성·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 근거 등
-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근거 마련(제28조)

< 제4장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

-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무 명시(제30조, 제31조)

- 농업관측, 생산조정,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 등 농산물 수급안정시책
- 도매시장 등 유통 인프라 및 농산물의 포장·규격화 등 물류의 표준화 촉진
-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및 유통교육 등을 위한 유통조성시책 등
-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 및 가공식품산업 육성 등 지원근거 마련(제32조, 33조)
 -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제 등의 도입
 -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수입농산물 검역

< 제5장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 >

-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의 원칙 규정(제34조)
 -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
 -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익증진을 위하여 인력·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의 근거 마련
 - 해외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투자환경 조사 등 해외농업개발의 근거 마련
- 농산물의 수출진흥 및 지원(제35조)
 -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 수집 제공 등의 시책 수립
- 농산물의 수입관리 강화(제36조)

< 제6장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 >

- 농촌지역개발 시책 도입(제38조)
 - 외국의 농촌문화·전통체험관광 추세를 감안, 지역의 특색을 살린 현장체재형 관광(녹색관광) 개발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도·농간 교류확대 및 지역의 문화시설·행사 등에 지원근거 마련

-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제39조)
 - 세계적인 농업정책동향에 부응하고 가격지지정책 축소에 대비, WTO상 허용된 각종 직접지불제도의 국내도입 근거 마련
- 농업재해에 대한 보험·공제 등 필요한 시책 강구(제40조)

< 제7장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추진 >

-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제42조)
 - 중앙 및 지방(광역, 기초) 단위의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규정
- 농정심의회 설치·운영(제43조)
 - 농업기본법상 농업정책심의회, 농발법상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합, 중앙·지방 농정심의회 신설
-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44조)
 - 중앙·지방계획의 연계성 및 계획수행정도를 평가, 예산 차등지원
- 지자체의 연차보고서 작성의무(제45조)
 - 중앙정부의 연차보고서 작성의무를 지방정부까지 확대, 지방농정의 모니터링 체제 강화.

그림 2-1. 농업·농촌기본법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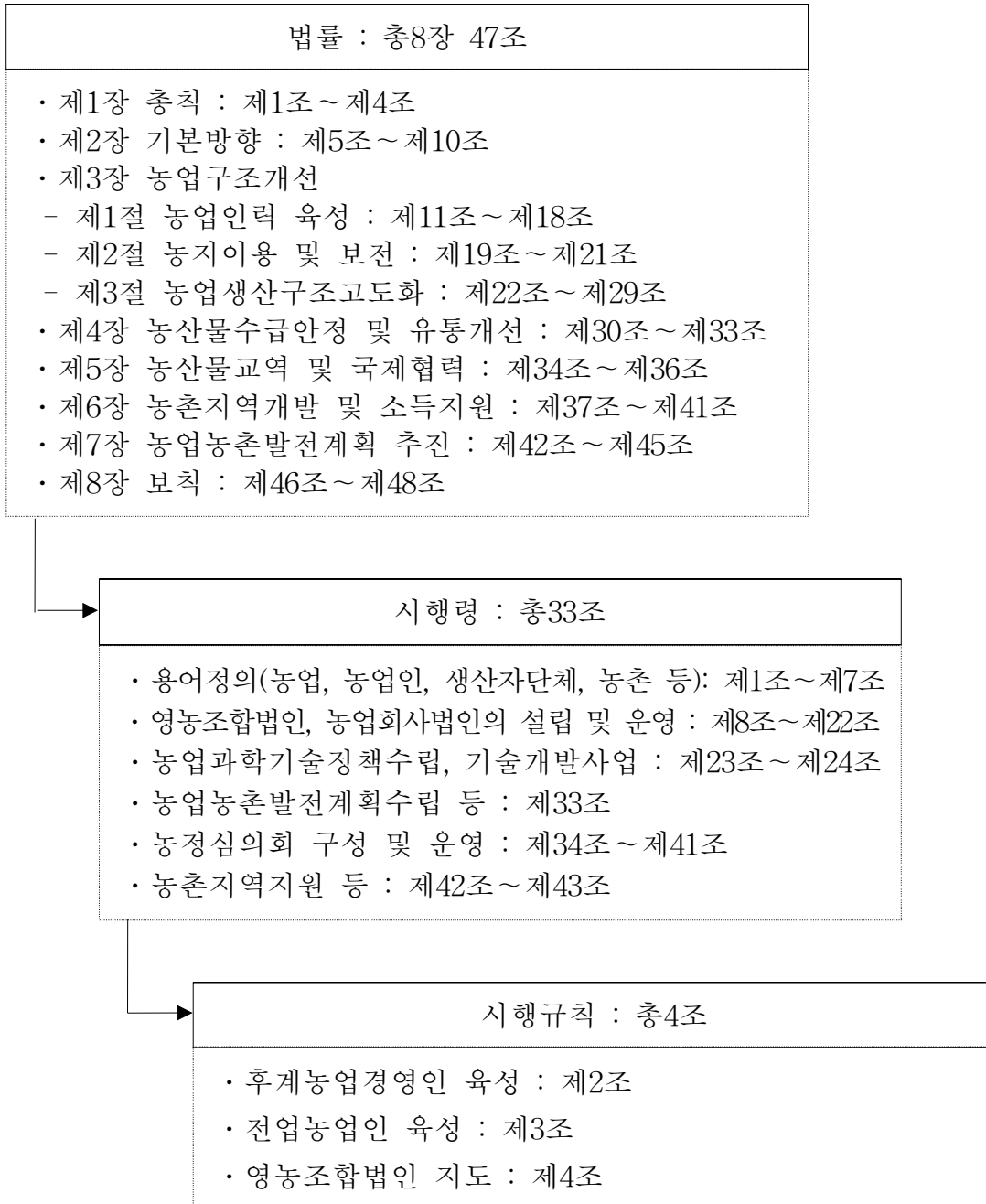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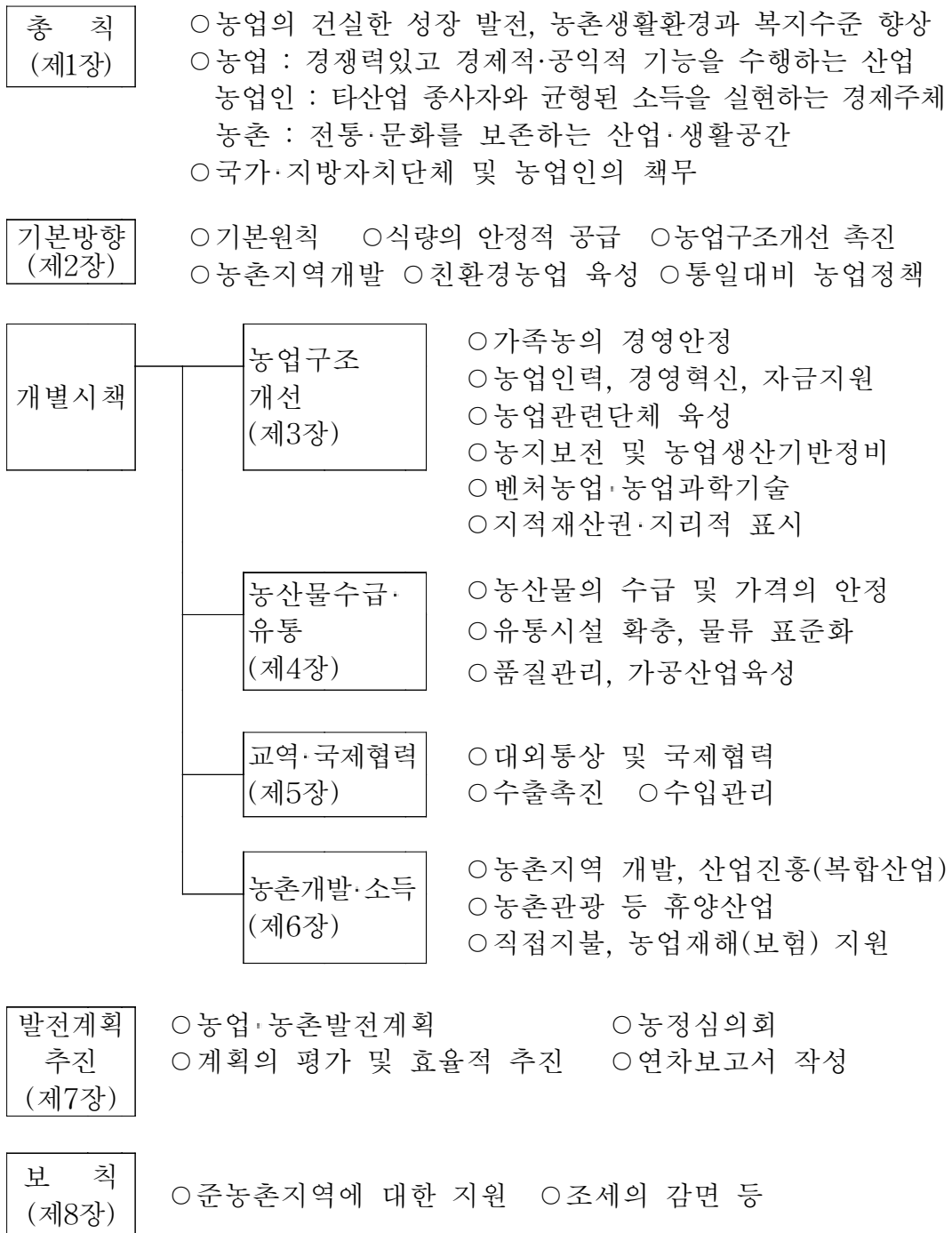


그림 2-2. 농업·농촌기본법의 구성



3.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경과

- 농업·농촌기본법은 제정('99. 2월) 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개정의 내용은 국회와 정부 및 유관 단체의 부분적인 요구에 따라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다.

표 2-1.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경과

개정일	주요 내용
제1차 개정 (2001.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책무 규정 신설 •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시 식량의 적정목표 제시 및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신설
제2차 개정 (200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부담금 관련조항 삭제
제3차 개정 (2003.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경영인' 명칭 변경 및 지원규정 신설 •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권자를 농림부장관에서 시장군수로 변경

- 제1차 개정은 2000년 7월 28일 정장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01년 3월 28일 개정되었다. 제안 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 제6조에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규정한 바 있으나,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한 기본방침, 주요 품목별 식량자급률 목표의 제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등을 포함한 식량안전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식량안전보장계획이 수립되면 지체없이 중앙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 제4조 3항으로 “소비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책무를 명시하였다.

- 제42조를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①농림부장관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3. 농업·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4. 그밖에 농업·농촌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 계획과 그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차 개정('01.12.31)은 부담금관리기본법(2001.12.31 법률 제6589호) 제정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농지전용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제3차 개정은 2003년 7월 24일 이해구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03년 12월 11일 개정되었다. 법 개정의 취지는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바꿈으로써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외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농업인 및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업적 농업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권자를 현재의 농림부장관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하고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촉진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농림부장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게 하려는 것이다.

-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대한 지원의 목적을 영농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명확히 하였다(안 제12조제1항).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제12조제2항 신설).
-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권자를 농림부장관에서 관할 시장·군수로 변경하였다(제15조제5항).
-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사항과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92~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를 각각 준용하도록 하였다(제1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촉진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게 하였다(제28조제2항).

제 3 장

외국의 농업기본법 동향

- 이 장에서는 프랑스와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농업기본법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프랑스의 농업기본법

1.1. 기본법의 성격

- 프랑스 농정은 「농업법전」과 「농업기본법」의 두 가지 법률 체계를 근간으로 운용되고 있다.
 - 농업법전(code rural)은 농업 분야의 여러 가지 법률을 하나의 법전으로 종합한 것이며, 1791년 ‘농업법전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1955년에 전8편 1,337개조로 집대성되었다.
- ‘1955년 농업법전’은 ‘1960년 농업기본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개정작업을 거쳐 계속 신법전이 편찬되고 있다. 특히 ‘1955년 농촌법전’이 제정된 직후 이 법률이 가지는 제도적 및 실태적으로 문제

에 직면하게 되었다.

- 고도 경제성장 하에서 농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책 전환이 요구되었으며, 또 전통적으로 자급자족적인 성격이 강한 소규모 가족농경영이 성격이 변하는 등 프랑스 농업의 실태가 변화함에 따라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960년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여 구조정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 농업기본법은 농업의 기본방향(Loi d'orientation agricole)을 설정하는 법률로서, 국가 발전에 있어서 농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본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 농업법전과 농업기본법의 관계를 보면, 농업법전은 농업에 관한 기본적인 제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농업기본법은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으로서 특별법적인 성격이다. 따라서 농정추진에 있어서 농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것은 농업법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1.2. 기본법의 추진 경과

- 1960년에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980년과 1999년의 두 차례에 걸친 대폭 개정이 추진되었다. 최초의 기본법인 1960년 법 및 62년 보완법은 농업경영체의 근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농업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0년의 개정은 농산물 무역에 따른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유럽경제공동체(EC)의 공동농업정책(CAP)을 준수하고 정책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9년의 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새로운 농업 방향의 설정을 위하여 1996년부터 검토가 시작됐지만 내각교체 등의 우여곡절 때문에 사회당 내각 하에서 1999년에 통과되었다. 기본법 제정 및 개정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 ① 1960년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Loi d'orientation agricole) 제정
 -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업경영체의 근대화를 도모하는 농업구조개선에 중점
 -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SAFER) 설치 및 농지유동화 추진의 근거 마련
- ② 1962년 「농업의 방향 설정에 관한 법률의 보완법」(Loi complétant d'orientation agricole) 제정
 - 농업구조개선사회기금(FASASA) 설치, 이농과 전직 장려
- ③ 1980년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Loi d'orientation agricole) 개정
 - 농업 무역을 둘러싼 경쟁력 논리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시책과 지역농업 유지를 위한 영농정착에 중점
 - 유럽 공동농업정책(CAP)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 전환
- ④ 1995년 「농업근대화법」(Loi d'orientation agricole) 제정
 - 공동농업정책의 규칙과 역내 우선 정책의 원칙을 준수하고, 동시에 국제적 약속을 농정에 반영
- ⑤ 1999년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Loi d'orientation agricole) 개정
 - WTO 출범을 계기로 등장한 농업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농업의 고용유지, 농산물의 안전성과 질, 농촌공간 이용)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공공개입방식의 합리화를 추구

1.3. 1999년 개정 농업기본법의 구조

- 현행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Loi d'orientation agricole)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총칙

- 제1부 국토경영계약(CTE)
- 제2부 농업경영체와 농업인: 제1장 농업경영체, 제2장 농업경영 구조의 방향, 제3장 농업경영주 배우자의 법적 지위, 제4장 농업임금 노동자, 제5장 사회문화활동위원회 규정, 제6장 농업근로자의 근로 감독 규정
- 제3부 농업사회보장기구의 기능
- 제4부 경제조직: 제1장 농업협동조합과 생산조직, 제2장 시장개입 조직, 제3장 농업직능 조직, 제4장 농업상임지도위원회 구성, 제5장 농식품수출 상임위원회 창설
- 제5부 농식품의 품질·식별·안전성
- 제6부 농림공간의 관리
- 제7부 인력육성 및 연구개발
- 제8부 기타

1.4. 최근의 기본법 개정에 관한 논의 동향

- 2003년 9월 농촌정비법이 의회에 제안됨에 따라 농업성장관은 2004년에 농업근대화법안 개정 착수의 뜻을 표명하고, 2006년 1월까지 입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깔려 있다.
 - 대통령 및 농업장관의 연설, 기본골격 문서에서는 기본법 개정의 계기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며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의식, 농업에 대한 기대변화 등에 대응하면서 농업경쟁력의 유지 및 발전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 ① 공동농업정책개혁, WTO 협상으로 공동농업정책의 시장조정(보호)기능이 약화되고 EU 역내 및 역외 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03년 6월에 합의된 공동농업정책 개혁으로 분리된 단일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어 종래의 시장조직형 농업정책에서 직불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된다. 이런 새로운 환경 하

에서 프랑스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킨다.

- ② 농업을 둘러싼 여건들이 급변하고, 농업에 대한 소비자·일반국민의 의식과 기대가 변화하고 있다. 농업을 둘러싼 사회경제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식품품질에 대한 관심고조 등에 대응한다.

- 농업단체들은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따라 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공동농업정책개혁 실시를 위한 제도 개정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농업이 직면한 문제 전반에 널리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이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 2004년 7월 농업성은 주요 농업단체(전국농업회의, FNSEA, CNJA)와 협의하여 9월에 국회의원, 농민, 농업단체, 유통·농산가공업, 환경보호단체 관계자, 전문가, 저널리스트 등 40명으로 구성되는 전국기본방향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Orientation, CNO)를 설치하려 다음과 같은 5개 분야로 나누어 건토를 진행하였다. 즉, ①경제조직, 시장·위기관리, 각 분야의 파트너간 새로운 거래관계 등, ②더 나은 생활·노동환경실현을 위한 농업경영자 및 농업경영체의 개념 수정, ③토지제도 개선, ④농업제도 전반 재검토, ⑤사회전체에서 공유하는 농업의 비전 등이다.

- CNO는 '04년 10월에 '농업의 방향설정법안'의 기본골격을 확정하고 법안준비의 기본이념으로 ①경제면에서는 자국 농업과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EU와 세계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② 사회면에서는 경제 외의 부문과의 생활·노동 조건이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③ 환경·식품 면에서는 EU 틀 안에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분야 : 경제조직, 시장·위기관리, 각 분야의 파트너간의 새로운 거래관계 등

- ① 공급과 각 업계의 조직화 :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 판매 조직화, 유통경로 단축, 업계조직 강화, 계약적 방법의 추진 등
- ② 위험·불확실성 관리 : 수확보험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여, 임의 보험이나 상호부조의 범위 등에 관해 전문적 검토가 요청됨. 소득보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CNO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언
- ③ 신규용도 : 특히 생화학 연료의 추진
- ④ 품질·차별화 : 품질에 관한 제도 간소화, 소득·관리의 간소화
- 제2분야 : 보다 나은 생활·노동환경 실현을 위한 농업경영자 및 농업경영체의 개념 재검토
- ⑤ 농업경영자와 농업경영의 위상 : 법인조직이 진전된다는 인식 하에 법인조직에 대해 경영자산과 개인자산 분리를 촉진하고, 농업경영체를 개인에서 독립된 하나의 경제단위로 인식하여 그 계승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정비. 법인조직이 농업활동과 함께 농업이외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의 장애를 제거하고, 외부자금 도입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
- ⑥ 신규취농·경영계승·전환 관련 제도 : 개인자산과 구별해 경영자산을 계승하는 제도 경영승계 제도의 정비. 농업이 평생직장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참여 및 퇴출제도를 정비
- ⑦ 고용노동자 : 고용노동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할 경우의 처우 등을 명확화
- 제1분야 및 제2분야 공통의 과제
- ⑧ 노동력·기계설비의 공동이용 : 대행서비스 제도 개선 등
- 제3분야 : 토지제도 개선
- ⑨ 농지정책 : 농촌지역의 국제적 토지정책, Zoning(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농민의 적극적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도시 근교에서 농업활동 유지를 위한 새로운 농지보유 형태 검토
- ⑩ 구조정책 : 각 주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보수적이고 제도변경에는 신중. 어떤 형태로든 농업경영규모에 관한 구조규제를 계속하지

만, 목적·이론적 근거·규제·개입 내용에 대해 현재 사회정세 안에서 재검토. 제도설계에 있어 농가 단일지불을 고려

- ⑪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 : 농지보유 중심 형태인 임대차에 대하여 양도가능한 계약형태를 마련

- 제4분야 : 농업을 둘러싼 제도 전반의 재검토

- ⑫ 정부·지방공공단체·농업단체의 관계 : 정부의 현 차원의 기관 및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주·현 기본방향위원회의 역할 등

- ⑮ 연구·보급·교육 양성

- 제5분야 : 사회 전체에서 공유하는 농업의 비전

- ④ 품질·차별화(전술)

- ⑨ 농지정책(전술)

- ⑫ 정부·지방공공단체·농업단체의 관계(전술)

- ⑬ 환경적 서비스 제공 : 농민의 환경·국토이용의 공공적 서비스 공급을 촉진하고, 서비스 보수 지불방법을 정할 필요. 서비스 보수는 계약적 방법에 의한 직접지불로 일정기준 이상의 노력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것으로 일반적 기준을 정할 필요

- ⑭ 농업관련 세금·사회정책 : 세제의 공평성 및 부담 경감. 특히 농지과세 경감

- 프랑스 농업성은 2005년 2/4분기에 법안을 결정한 후 의회 심의에 넘겨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결정하고, 2006년 1월 공동농업정책 개혁 실시에 맞춰 새로운 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일본의 농업기본법

2.1. 기본법의 성격

- 일본의 농정 추진방식은 농업기본법에 의한 정책과 이념을 토대로

하여 개별법에 의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체제이다. 기본법에서 국가의 농정 목표와 수단에 관한 방향이 제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 기본법은 ‘정책의 기본’을 정한 것으로서 항시적이며, 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한 선언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관련하는 다른 법률에 우월하며 다른 법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최초로 제정된 것이 1961년의 ‘농업기본법’이다.
 - 기본법의 한계점은 기본법과 다른 개별법간의 구체적인 관계가 불명확하고, 또 법 제정 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기본지침으로서의 기본법의 역할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새로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새로운 운용방식의 입법이 1999년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다. 이 법에서는 정책영역이 종전의 ‘농업’에서 ‘식료’, ‘농업’, ‘농촌’으로 확대되어 정책분야가 농업정책에서 식료정책, 농촌정책이 추가되었다. 또 운용방식도 ‘기본계획’을 도입하는 등 개선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쇄신하였다.
- 기본계획이란 정책운용의 기본방침 제시한 것으로서 10년간 운용방침을 결정하고, 5년마다 경신하도록 하여 기본정책의 추진지침을 담보하되, 여건변화를 비교적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초의 기본계획은 2000년 3월 결정되었으며, 여기에 식량자급률 목표 등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2005년 3월 기본계획이 개정되었다.
- 현행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목적은 식료·농업·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그 실현을 도모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식료·농업·농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2. 기본법의 추진 경과

- 1961년에 농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농정의 이념과 기본방향이 199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으며,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 기간 동안을 ‘기본법 농정기’라고 칭하고 있다.
 - 농업기본법은 고도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과 타산업간의 생산성 및 생활 수준의 격차를 시정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생산정책, 가격·유통정책을 통하여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 UR 타결과 WTO 출범에 대응하여 1994년에 ‘신농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6년 9월부터 신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 1994년 8월에 발표된 농정심의회보고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한 농정의 전개방향」에서 앞으로의 농정 방향과 관련하여 ‘농업기본법 재검토’라는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기본법에 대하여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 농림수산성 내에 「농업기본법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작업한 결과가 1996년 10월 동연구회 보고서로 공표되었으며, 이 보고서에 농업기본법의 배경·목적·내용 등의 재확인, 신기본법에 고려사항 등을 적시하였다.
 - 1997년 1월, 정기국회에 신농업기본법안 및 관련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은 ①식료안보정책의 구축, ②경영주체의 확보·육성대책, ③가격정책의 전환(시장경제원리강화) 및 소득확보대책 도입, ④중산간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구체화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인식하려는 국민적 기대에 묻히게 되었고,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1999년 7월 12일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3.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주요 내용

1) 취지

- 최근 일본의 경제사회 및 식료·농업·농촌을 둘러싼 급격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여, 식료·농업·농촌의 각 분야에 걸친 시책의 기본이념과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 목적

- 이 법률의 목적은 식료·농업·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그 실현을 도모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식료·농업·농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3) 법률의 구성

(1) 기본이념

- ①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의 확보
- ② 다원적 기능의 발휘
- ③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 ④ 농촌의 진흥

(2) 기본계획

- 기본이념에 따른 시책의 확실한 실시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책에 관한 기본방침, 식료자급률 목표, 종합적·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등을 명시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동 계획은 제 사정의 변화를 감안하고 그 효과에 관한 평가에 근거하여 ‘대략 5년’마다 변경한다.

(3) 기본시책

- ①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시책

- 식료소비에 관한 시책의 확충
 -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 수출입의 제한
 - 유사시의 식량안전보장
 - 국제협력 등
- ②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
- 바람직한 농업구조 확립
 - 전업농에 의한 농업경영 전개
 - 농지의 확보 및 효율적인 이용
 -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 인재의 육성·확보
 - 기술의 개발·보급
 - 가격정책과 경영안정
 - 재해대책
 - 자연순환기능의 유지증진
 - 농업자재대책 등
- ③ 농촌의 진흥에 관한 시책
- 농촌의 종합적인 진흥
 - 중산간지역 등의 진흥
 - 도시농업의 진흥 등
- (4) 연차보고 및 심의회
- ① 정부가 식료·농업·농촌정책에 대하여 '연차보고'를 작성한다.
 - ② 식료·농업·농촌정책에 대하여 조사·심의를 행하는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4) 기본이념

(1)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

- ① 식료는 인간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것이고, 국민 생활의 기초로서 중요성을 감안하여 장래에도 양질의 식료가 합리적인 가격

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 ② 세계 식료수급 및 무역이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식료 공급은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고, 수입 및 비축을 적절히 조절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식료공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면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도모함으로써 고도화하고, 다양화하는 국민수요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 ④ 국민이 최소한도로 필요로 하는 식료는, 유사시에도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다원적 기능의 발휘

- 국토 보전, 수원 함양, 자연환경 보전, 양호한 경관 형성, 문화 전승 등 농촌에서 농업생산활동이 행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다원적 기능은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감안하여 장래에도 적절하고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

(3) 농업의 지속적 발전

- 농업은 식료, 기타 농산물 공급기능 및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업자원 및 농업의 경영주체가 확보되어 지역 특성에 따라서 바람직한 농업구조가 확립되는 동시에, 농업의 자연순환기능이 유지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도모되어야 한다.

(4) 농촌의 진흥

- 농촌은 농업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생활의 장이다. 농업이 가지는 식료, 기타 농산물의 공급기능 및 다원적 기능이 적절하고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생활환경 정비, 기타 복지향상에 의해 그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

5)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 ① 정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방침
 - 식료자급률 목표
 -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 기타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반 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시책효과에 관한 평가를 근거로 대개 5년마다 변경하고, 변경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한다.

6)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시책

(1) 식료소비에 관한 시책의 확충

- ① 식료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의 위생관리, 품질관리의 고도화, 식품표시의 적정화 등을 추진한다.
- ② 건전한 식생활에 관한 지침 수립, 식료소비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한다.

(2)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 사업활동에 수반하는 환경에 대한 부하 경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배려하면서 식품산업의 사업기반 강화,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유통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3) 농산물 수출입에 관한 조치

- ① 국내생산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수입농산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산물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 조정, 수입 제한 등을 실시한다.
- ②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조사 확충, 정보 제공, 보급

선전 강화 등을 실시한다.

(4) 유사시의 식료안전보장

- 유사시에 국민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식료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식료증산, 유통제한 등을 실시한다.

(5) 국제협력의 추진

- 세계 식량수급의 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지역에 농업 및 농촌의 진흥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7)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

(1) 바람직한 농업구조의 확립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하고, 이러한 경영이 농업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농의 유형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생산기반 정비, 경영규모 확대 등 농업경영기반을 강화한다.

(2) 전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에 의한 농업경영의 전개

- 전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 기타 경영의욕이 있는 농업인이 창의력을 살린 농업경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영발전과 그 원활한 계승에 기여하는 조건을 정비하고, 가족경영의 활성화,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추진한다

(3) 농지의 확보 및 효율적 이용

- 국내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지의 확보 및 그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로서 이용해야 할 토지의 농업적 이용, 효율적·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는 자에 대한 농지이용의 집적, 농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등을 추진한다.

(4)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 양호한 영농조건을 갖춘 농지 및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면서 농지 구획의 확대, 논외 범용화, 용배수시설기능의 유지증진 등 생산기반의 정비를 추진한다.

- (5) 인재의 육성 및 확보
- ① 인재의 육성 및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자의 기술 및 경영 관리능력의 향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방법의 습득 등을 촉진한다.
 - ② 국민이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도록 농업에 대한 교육을 진흥한다.
- (6) 여성참여의 촉진
- 여성의 농업경영에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여성이 농업경영 및 이에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 (7) 고령농업자의 활동 촉진
- 고령농업자의 역할분담, 그가 가지는 기술·능력에 따라서 보람을 가지고 농업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고령농업자의 복지를 향상한다.
- (8)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기술의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화, 국가 및 도도부현 시험연구기관, 대학, 민간 등의 연계 강화, 지역 특성에 따른 농업에 관한 기술 보급을 추진한다.
- (9) 농산물 가격형성과 경영안정
- ① 농산물 가격이 수급사정 및 품질평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형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한다.
 - ② 농산물 가격의 현저한 변동이, 육성해야 할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한다.
- (10) 농업재해에 의한 손실보전
- 재해에 의한 손실의 합리적인 보전, 기타 필요한 시책을 실시한다.
- (11) 자연순환기능의 유지 증진
- 농업이 가지는 자연순환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농약 및 비료의 적정한 사용, 가축배설물 등의 효율적인 이용에 의한 지력증

진 등을 추진한다.

8) 농촌의 진흥에 관한 시책

(1) 농촌의 종합적 진흥

- ① 농촌에서 토지의 농업적 이용과 다른 이용을 조정하여, 농업의 진흥, 농촌의 종합적 진흥에 관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 ② 지역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관이 뛰어나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교통·정보통신·위생·교육·문화 등 생활환경의 정비, 기타 복지향상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2) 중산간지역 등의 진흥

- ① 중산간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신규작물 도입, 지역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한 농업·기타 산업의 진흥에 의한 취업기회의 증대, 생활환경의 정비에 의한 정주의 촉진 등을 추진한다.
- ② 중산간지역 등에서는 적절한 농업생산활동이 계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농업의 생산조건에 관한 불리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 등에 의하여, 다원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한다.

(3)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 ① 국민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시민농원의 정비 등을 추진한다.
- ② 도시 및 그 주변지역의 농업에 대하여 소비지에 가까운 특성을 살려서 도시주민의 수요에 따른 농업생산을 진흥한다.

9)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 설치

- ① 농림수산성에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 ② 심의회는 그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또 총리, 농림수산장관 또는 관계부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법률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3. 미국의 농업법

3.1. 농업법의 성격

- 미국의 농정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제시책을 일원화한 단일 법률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통칭 「농업법」(Farm Bill)이라 불리는 법률을 제정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중점적·일체적으로 농정을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미국 방식은 농정의 방향과 이념을 제시한 ‘기본법’과 구체적인 시책을 규정한 ‘개별법’의 체계로 추진되는 프랑스 및 일본 방식과는 달리 한시적인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 농업법은 1920년대 농산물의 생산과잉에 직면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8년에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제정한 것이 최초이며, 이후 5~7년 정도의 기간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한시적인 「농업법」의 시효가 소멸하거나 대체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38년 농업조정법」과 「49년 농업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농정의 국제적인 규율을 지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96년 농업법에서는 그 동안 생산조정하의 직접지불정책(blue box)인 부족불제도를 허용대상정책(green box)인 고정직접지불로 전환하였으며, 더욱이 2002년 농업법에서는 세계 곡물가격의 하락 등을 반영하여 가격보전직접지불(CCP)을 도입하면서 농업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건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다.

3.2. 주요 농업법의 추진 경과

- 1920년대 농산물의 생산과잉에 직면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

책의 일환으로 「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제정, ①생산조정제도, ②농산물을 담보로 한 가격지지 용자제도, ③지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패티가격제도 등을 농정에 도입한 것이 최초의 농업법이다.

- 이 법률은 1935년, 1938년에 개정되었으며, 「38년 농업조정법」은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48년 농업법」에서는 패리티가격 지수를 인하하였으며, 1949년에 제정된 「49년 농업법」(Agricultural Act)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따라서 「38년 농업조정법」과 「49년 농업법」이 항시법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이 법률의 효력을 대체하는 법률, 즉 농업법(Farm Bill)을 제정하여 일정기간 농정추진을 반복하고 있는 체계이다.

○ 주요 농업법의 제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 1938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항시법)
- 1948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 1949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항시법)
- 1954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 1956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 1962년 식량·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Act)
- 1964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 1965년 식량·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Act)
- 1970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 1973년 농업·소비자 보호법(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1976년 식량·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Act)
- 1981년 농업·식량법(Agriculture and Food Act)
- 1985년 식량안보법(Food Security Act)
- 1990년 식량·농업·보전 및 무역법(Food,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Trade Act)

- 1996년 연방 농업 개선 및 개혁법(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Reform Act)
- 2002년 농장안전 및 농촌투자법(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3.3. 2002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 2002년 농업법은 10장(title), 530조(sec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은 420쪽에 달한다. 장별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장 품목계획
 - 제2장 보전
 - 제3장 무역
 - 제4장 영양계획
 - 제5장 금융
 - 제6장 농촌개발
 - 제7장 연구관련
 - 제8장 산림
 - 제9장 에너지
 - 제10장 기타

1) 3대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수립

- 2002년 농업법은 품목별 소득안정제도로써 1996년 농업법상의 제도인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fixed decoupled payment)와 마케팅론제(markeing loan)를 유지하는 한편 목표가격제를 내용으로 한 경기대응 직접지불제(counter-cyclical payment)를 새로 도입하였다.
 - 현행 마케팅론 제도를 유지하고 대두를 제외한 모든 작물의 용자 단가를 상향조정하였다. 생산중립적 직접지불 보조금액은 보조금

표 3-1. 2002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구 분		개 요
법률 명칭		2002년 농장안전 및 농촌투자법 (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실시 기간		6년간(2002-07년)
추가적 예산조치*		10년간 828억 달러(6년간 517억달러)
소득 안 전 망	융자단가 (loan 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상(단지, 대두 인하, 쌀 동결) • 마케팅론제도, 융자부족불제도 존속
	고정직접지불 (fixed decoupled pa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 인상 • 대상품목, 기준면적 확대
	가격보전 직접지불 (counter-cyclical pa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이후의 시장손실지불을 제도화 - 가격변동에 따라 목표가격과의 차액보전 • 대상품목과 기준면적은 직접지불과 동일
농촌지역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지지역 케이블설치 보조 - 광케이블설치 보조 - 생산자의 농산물가공사업 등 지원 - 농촌지역투자·농촌공업계획 등 확충
환경보전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확충(10년간 171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보전유보사업(CRP) 확충 - 환경개선장려사업(EQIP) 확충 - 친환경농법 도입
원산지표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 낙화생, 과일, 식육(가금육, 가공품은 제외), 어패류 등 대상 - 미국 국내에서 생산, 재배, 가공된 것에 한하여 '미국산' 표시
정부보조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확충(1농가당 36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불 상한 40,000달러 - 가격보전직접지불 상한 65,000달러 - 가격지지 상한 75,000달러

단가, 대상면적 기준단수에 의해 정해지고, 보조금 지급시기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의 50%까지 수확전년 12월 1일부터 지급될 수 있으며, 잔액은 수확한 이후 10월중에 지급된다.

- 경기대응 보조금은 대상품목의 실효가격(effective price)이 목표가격(target price)보다 낮은 경우에 지급된다. 경기대응 보조금의 총액은 보조금 단가, 보조금 대상 면적, 기준 단수에 의하여 정해지며,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은 경우 생산자는 경기대응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보조금 지급시기는 예상보조금액의 35%는 수확한 연도의 10월중에 지급받으며, 35%는 이듬해 2월 잔액은 그 작물의 유통연도 중 마지막 달에 받게 된다.
- 한편, 2002년 농업법은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조금 지급한도 및 지급한도의 변경이 농가소득과 농지, 농업경영기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와 건의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2) 환경보전정책 강화

- 연방농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물론 토양과 수자원의 보전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즉, 미국의 토양, 공기, 수자원, 야생생물보전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율적 환경보전제도를 규정하여 농가에게 새로운 환경보전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현행 환경보전제도는 가축, 작물, 과수, 채소,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목초지 보전제도(grassland reserve program)를 확대하여 방목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보전감시제도(Conservation security program)를 새로 도입하였다.

3) 농촌개발과 고부가가치농업

- 농촌지역 산업기반조성과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농촌개발분야의 지

원을 확대하였다. 그 동안 농촌주민들의 주요관심사항이었던 농촌지역 광역통신망확충, 텔레비전 난수신지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부가가치 시장개발보조제도(Valus added market development grants)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부가가치용 가공시설을 보유한 신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였고, 아울러 생산자의 농산물 가치 증진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간 지원 수준을 확대하였다.

4) 해외무역 및 수출 촉진

- 미국은 농산물의 40%를 해외로 수출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소득유지에는 수출시장 확대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농산물 무역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무역정책은 WTO규범에 따른 미국의 관련의무를 준수하도록 수립되었다. 미국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확대 및 유지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인 투자확대와 식량이 부족한 개도국에게 미국의 과잉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국민 영양

- 농산물을 영세가구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적정식량 소비를 보장하는 제도가 푸드스탬프(Food Stamp) 제도이다. 이 제도를 보다 간소화하여 각 주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진입의 장벽을 제거하고 근로자 가구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였다.
- 농업과 영양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푸드스탬프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추가 지원으로 새로운 표준 공제액은 각 년도 빈곤선의 8.35%이며 매년 조정된다. 영세가구에 대한 임시지원(TANF)제도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각 주는 임시 푸드스탬프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가구는 종전 현금보조 종료 후 5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합법적 이민자 수혜조건을 부분적으로 복원하고 제

도를 간소화하였다.

- 긴급식량지원제도, 지역식량계획, 학교급식제도, 등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였다. 주정부가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최대한 지역산을 이용하도록 농림성 장관은 주정부에게 보조금 지급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신선과일과 채소의 국내소비증가를 목적으로 비용을 보조하는 영양정보 시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EU)은 이른바 ‘효율주의’의 구조정책 노선에서 소농보호적인 지역농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각국의 농정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농업을 단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즉 산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이며, 또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생산 주체인 농민과 생산의 공간인 농촌 지역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 농촌에 대한 지역정책적인 맥락에서 강조되는 것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이며, 농업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국토 보전이나 환경적인 측면, 즉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향이다.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세계 각국은 시장지향적인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은 농정의 국제화라는 보편성(global standard)과 자국 농업의 특수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 주요국의 농정개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은 정책 목표가 생산성을 중시하는 농업정책에서 소득을 중시하는 지역정책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정책수단 측면에서는 가급적 시장왜곡 현상을 줄이고

농업을 더욱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유도한다는 방향이다. 특히 농산물 가격지지를 감축하고, 직접지불 방식으로 농가 소득안정, 환경보전, 농촌지역의 유지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표 3-2. 세계 농업과 농정의 흐름

시기 및 특징	주요 정책 내용, 성과
1960~70년 생산·가격정책에서 구조정책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혁명과 가격지지를 바탕으로 증산을 도모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산을 통한 소득문제 해결에는 근본적 한계 노출 ○ 1960년대를 전후로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공간 소득균형을 동시에 추구
1980~90년 효율주의 농업의 한계와 지역정책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구조정책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과잉에 따라 UR 협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 - 생태계 순환체계의 붕괴, 환경오염 문제 노출 ○ 1980년대 초부터 지역농업 유지를 다양한 정책수단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자원 및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1990~2000년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과잉해소, 환경보전을 위한 농법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의 대두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생태, 문화 등에 대한 가치 인식 ○ 농업보조를 줄이고 시장지향적 농정 추구

○ 2002년 제정된 미국의 농업법(Farm Bill)은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농업경영안정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등 자국 농업의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02년 농업법의 핵심인 소득안정망과 환경농업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정책수단이다. 특히, 환경정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유지와 동시에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EU는 2003년에 농정개혁을 추진하여 농정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프랑스는 농업기본법의 대폭 개정을 추진하고 있

- 다. 프랑스의 농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기본방향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Orientation, CNO)는 농업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기본법의 이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즉, 프랑스 농업은 식용농산물의 생산, 식용 이외의 농산물의 생산, 환경 서비스의 공급, 국토이용서비스의 공급이라는 네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농업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역할이 수행되므로 종전과 같은 단일 농업모델에 기초한 정책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일본은 1999년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10년 기간의 중장기 계획인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 3월에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확정하였다. 일본의 기본법에서 인식하고 있는 농산물 시장개방, 세계 식량수급불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농정이 추구하고 있는 식량안보, 농업구조개편, 농가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소비자 지향 농정,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촌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 등도 우리나라의 농정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

- 이 장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을 왜 개정해야 하는가 하는 배경에 대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기본법 개정에 관한 각계 의견

1.1. 국회의 개정 논의

- 2004년 이후 정당과 국회에서 농업·농촌기본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다양하게 제기하였으며, 2005년 8월 현재 국회 사무처의 계류의안 자료에 의하면 총 4건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2004년 7월 19일,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 외 21인이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 제안이유: 식량자원은 세계 식량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식량이 무기화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안보상의 문제로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급능력은 반드시 유지해

야 할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은 경지면적의 감소와 시장개방 확대로 30%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고 이러한 추세는 경지면적 감소와 WTO 재협상에 따른 시장의 추가개방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투명한 세계 식량수급 전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농림부장관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계획에 관한 기본방침, 식량자급률의 목표 등의 사항이 포함된 식량자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204)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식량자급계획의 수립 등) ①농림부장관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식량자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식량자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량안보차원에서의 식량자급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2. 식량자급률의 목표
3. 식량자급률의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제반 시책
4. 그 밖에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제반여건 및 세계 식량생산량을 고려하여 식량자급계획을 매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2004년 12월 8일, 민주당 한화갑 의원 외 67인(농어업 회생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이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 제안이유: 이 법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6조(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제42조(농업·농촌발전계획)의 규정에 따른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수준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이 법 제20조(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제21조(농지의 보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의 적정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농지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제도가 기본법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 법 제43조(농정심의회)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가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심의, 집행, 감독, 평가, 보완 등 모든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그 동안 농정심의회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정부주도의 농정이 이루어져 왔던 점을 시정하여 농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조속히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핵심으로 하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정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농정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확보하여 농민의 농정불신을 극복하고 농업투융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여야 함. 또한 식량자급률의 목표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농지, 추곡수매, 직접지불, 공공비축, 가족농 육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농정대책이 상호 긴밀한 연계하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함. 또한 식량자급률의 목표수준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의 농정집행에 대한 감독·평가·보완의 과정도 실질적인 농민참여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농정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식량자급률의 목표수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품목별 자급률, 곡물자급률, 주식용 곡물자급률, 사료자급률, 공급열량자급률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품목별 자급률을 표시할 때는 적정 단수를 고려하여 적정 재배면적 혹은 사육두수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식량자급률과 농지보전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의 식량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적정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농정심의회를 활성화시키고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뿐만 아니라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보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농민의 참여와 의사반영을 위해 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기본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및 보완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101)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정부는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의 식량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적정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농지”를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농지”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농업·농촌발전계획의 변경) ①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매 5년마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변경 이외에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경우 농림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식량자급률의 표시) ①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식량자급률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1. 품목별자급률: 국민식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개별 품목에 대하여 중량기준으로 계산하여 표시한다.
2. 곡물자급률: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품목 중에서 곡물에 대해 식용과 사료용을 포함하여 중량기준으로 계산하여 표시한다.
3. 주식용 곡물자급률: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품목 중에서 기초 식량인 주요곡물에 대해 식용을 대상으로 중량기준으로 계산하여 표시한다.
4. 사료자급률: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품목 중에서 사료용을 대상으로 중량기준으로 계산하여 표시한다.
5. 공급열량기준자급률: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품목 전체를 모두 합하여 공급열량인 칼로리기준으로 계산하여 표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자급률을 표시할 때는 적정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수치들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중 “농업·농촌동향과 농정시책등”을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및 보완사항, 농업·농촌동향과 각종 농정시책의 추진 실적과 평가 및 보완사항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업·농촌동향과 농정시책등”을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및 보완사항, 농업·농촌동향과 각종 농정시책의 추진실적과 평가 및 보완사항등”으로 한다.

- 2005년 1월 12일, 자유민주연합 김낙성 의원외 10인이 농업인의 최저 소득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도시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농업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미비로 상대적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한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감안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때에는 농업인에 대해 도시근로자의 연평균소득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275)은 다음과 같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때에는 도시근로자의 연평균소득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05년 6월 1일,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 외 21인은 국내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 제안이유: WTO/DDA 농업협상 등 개방화의 파고 속에 우리 농업 및 농촌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 우리 농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을 통한 농민과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인

들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및 식품영양학적으로 인정된 기본적인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마저 소비자에게 알릴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생산자인 농민이 식품영양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에 한해 건강에 대한 효능 및 효과를 전자 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소비를 촉진토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해 식품영양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에 한해 건강에 대한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함. 농산물의 명칭, 재배방식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 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금지하도록 함.
-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71904)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8. “광고”라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9. “식품영양학”이라 함은 식품학과 영양학을 포함하며 학문적으로 정립된 내용을 말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농산물 전자상거래) ①농산물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해 식품영양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에 한해 건강에 대한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할 수 있다.

- ②농산물의 명칭, 재배 방식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정책토론회 논의

- 2004년 7월 23일, 열린우리당 농림특별위원회위원장 박홍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와 국회, 학계전문가,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기본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법 개정을 통해 개방화시대에 맞는 농업·농촌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예산 등을 세세하게 규정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주요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홍수 열린우리당 의원>

- 열린우리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손봐야 할 법률안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선정함.
-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처럼 농업과 농촌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및 예산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은 법안이 있어야 함.
- 법 개정을 통해 쌀 재협상이나 DDA농업협상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비하여 농업과 농촌, 농민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분명히 해야 함.

<정영일 서울대 교수>

- 지난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은 한마디로 졸속으로 추진된 법으로 농업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이념이 담겨있지 않음.
- 제대로 된 법개정을 위해 시일이 걸리더라도 농업계와 산업계, 소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기초 작업을 철저히 하고 이념이나 비전이 나온 후 조문에 명시해야 함.

<김충실 경북대 교수>

- 모든 것을 담아내려는 것에는 한계도 있고 시일도 오래 걸림. 개방화 시대에 농업·농촌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시급한 사안부터 요약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선언해 놓는 것이

올바른 개정방안일 것임.

<박진도 충남대 교수>

- 1967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이 사문화되고 실제 농정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이 법이 선언법으로 구체적 시책이 없었기 때문임.
-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 또한 선언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떨어짐. 따라서 향후 법개정 통해 구속력을 갖춘 시행법으로 바뀌어야 함.

<황민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 미국 신농업법에는 농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735억 달러의 예산까지 편성해 놓았음.
- 우리나라의 법률은 대부분 선언적 의미가 강함. 따라서 법 따로 정책 따로 추진됨.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법체계를 분석해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법안을 만들어야 함.

<안종운 농업기반공사 사장>

- 형식적으로 잘 만들어진 법은 지난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임. 1999년까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법제화한 이 법은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가 보고서로 제출한 농정의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조문을 작성하였음.
-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도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거친 후 농정의 목표와 기간, 실천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조현선 고삼농협 조합장>

- 조합원 1000명중에서 60세 이상이 45%이고 20~30대는 10농가도 안되며, 이대로 가다가는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임.
-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나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등을 통해 농업을 유지해 나가는 방안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담아야 함.

<김성민 농림부 농업정책과장>

- 당초 정부계획대로라면 정부는 2005년 정도에 119조원을 투융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뒷받침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등을

답은 내용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국회가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에 착수한 만큼 정부도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임.

<이홍세 한농연 정책부회장>

- 지난 문민정부 때 강조한 것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기대가 컸지만 요즘은 ‘떠나지 않는 농촌’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심정임.
-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활동할 주체인 농민이 없으면 무용지물임.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를 잘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등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잘 반영되어야 함.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

- 농업·농촌기본법에는 후계농업인육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신규창업농 육성정책을 내놓았음. 농업·농촌기본법의 취지와는 다른 것임. 법조문과 실제정책이 다른 사례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법개정 과정에 반영해야 함.

- 2005년 7월 5일,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서울 성내동 농협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재복 농협중앙회 상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복지 증진 추가
- 도농간 소득균형에 관한 조항 신설
- 식량수급의 안정과 식량자급의 중대성 강조
- 지역농업 육성 발전에 관한 내용 규정
- 생산자의 유통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 명시
-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식량자급률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문명수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

- 농산물 유통, 농산물 가공업, 벤처농업까지 농업의 범위에 포함
- 농업인의 정의 현실에 맞게 재정립 필요
 - 도시민의 취미농업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영농규모 300평의 경영자를 농업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농 양산 우려
 - 한우 1마리가 300~5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을 농업인으로 규정한 것은 현실과 괴리
 -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거주 개념의 도입 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은 실효성이 적고 책임한계에 따른 갈등 조장 우려
- 우량농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해 식량자급 목표와 생산 목표를 법 개정애 포함

<박노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 농업·농업인·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정의 문제의 체계적인 접근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중시하는 농정 기본원칙 수립 필요
-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필요
- 농지보전과 식량자급계획 연계, 농지보전에 따른 지원규정 신설
- 향후 농업통상협상시 농민 참여권 확대 보장
-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관련 조항 강화
- 농업·농촌발전계획상 식량자급계획 및 식량자급률 목표치 명시
-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식품산업 등 농업연관산업 삽입
-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및 강화

<박진도 충남대 교수>

-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 농업의 지속적 보전,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등을 기본이념으로 제시
- 농정의 대상과 범위를 농업·농업인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공급, 환경보전과 농촌지역진흥 등 일반 국민으로 확대
- 농업·농촌기본법은 중기(예, 5년)에 반드시 달성하지 않으면 안되

는 기초적인 중점시책의 근간을 규정

- 정부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 시행
- 농업·농촌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식료·농업·농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중심으로 법조문을 체계화
- 전업농업인 편향의 농업·농촌기본법이라는 비판에서 탈피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실현수단으로 효율성 고려
- 지역농업의 다양한 구성인들의 역할에 대한 배려
- 식량안보의 중요성 강조 필요
- 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 마련
- 소득보조, 특히 직접지불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중앙집권적 농정체계를 지방분권적 자율적 농정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 필요
- 안전하고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 명확화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국과 법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농업만 별도로 미국의 농업법처럼 개정한다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 * 미국의 농업법은 구체적 시책과 예산이 포함된 한시적 특별법 성격인데 반해, 일본이나 프랑스는 농업·농촌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법에서 규정
-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식량자급률 법제화는 문제가 있음

<송기호 변호사>

- 대내외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평가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농업체제로 나아갈 것인가 논의 필요
- DDA 체제에서의 농업경영조직, 농지보전에 따른 사회적 보상, 친환경농업기술의 획득과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장악 능력, 농림부의 식품산업 행정력 제고, OECD 평균 직불제 비율 약 40%선 달성과

농산물 가격 하향적 안정의 조화 등 중점 논의

<신동환 KBS플러스 대표>

- 농업은 농축산물의 가공, 유통, 농촌관광과 관련된 요식업, 서비스업 등을 포괄하여 관련산업육성의 기반 마련
- 농업홍보센터 설립,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지원 강화 등 근거 마련
- 가공식품업을 식품위생법이 아닌 농림축산업적 관점에서 규제할 근거 마련
- 농촌지역 경관조례 설치, 농촌관광관련 요식업·숙박업, 조세, 주류 생산면허 취득, 농촌관광 육성을 위한 일관된 행정체계 등 근거 규정 마련

<이정주 한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농업·농촌의 위기를 농민의 위기가 아닌 국민건강·환경파괴의 위기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식품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농업기본법』으로 명칭 변경
- 소비자의 역할 강화: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인·소비자에 추가하여 식품관련 기업의 역할을 규정하고, 주체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본이념에 따른 실질적인 법 정비 병행 추진: 기본법 내용을 농업을 보전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함
- 농업의 범위를 농축산물의 가공·유통, 농업관련 서비스, 농촌관광 등 농관련산업으로 확대
- 국내농산물 쿠티제 도입과 학교급식에서의 우리 농산물 의무사용에 대해 소비자·생산자·기업이 모여 사회협약 체결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 최근의 대내외적인 농업·농촌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향후 여건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는 한국 농업·농정의 체계를 법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
- 현행 기본법이 향후 농정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개정

- 공개행정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법 개정 작업 추진
- 개정의 주요 검토사항
 - 농업, 농업인, 농촌 등 기본적 개념에 대한 재검토
 - 식량자급계획 수립 등 식량의 안정 공급을 위한 조항
 - 남북농업교류 협력 등 통일대비 농업정책
 - 농업경영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항
 - 농업 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시책에 관한 사항
 -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강화와 관련된 조항
 - 도농교류 등 지역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항 등

<김사균 농촌진흥청 연구사>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은 농정을 위한 대안·철학·이념의 재정립을 위해 필요함.

<김주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교육팀장>

- 식량자급률 관계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목표치 설정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음.

<장세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농업·농촌을 지키는 고령·영세농을 위한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고 기본법 개정이 특정 조직·단체를 지원하는 조항 삽입은 불합리함.

<김경미 농촌진흥청 자원개발연구소 연구관>

-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주체임에도 남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영농의 성공적 승계를 위해서라도 여성농업인 성격을 구분해 줄 필요

<우호희 전국새농민회 경기도회장>

- 진흥지역 농가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성격의 직불제 지원이 필요

<김병철 농업기반공사 경제조사분석팀장>

- 농업생산의 기본요소인 농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농지를 진흥지역, 식량자급률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안종철 보은농협 조합장>

- 농업·농촌문제는 농림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부 관련부처에 가칭 ‘농촌발전대책과’를 설치할 필요
- 진흥지역에는 농지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보전 가치가 있는 진흥지역 유지 필요

<안영태 농업기반공사 사업관리팀장>

- 농업선진화를 위해서는 생산기반시설 정비가 필수적이므로 기본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함.

<장병수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회장>

- 앞으로 유통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가 주된 상행위가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기본법 개정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고품질 농산물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근거도 마련할 필요

<김주기 구국농촌살리기생명연대>

- 우리 농산물의 품질은 수입농산물에 비해 우수하므로 우리 농산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

<이빈과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

- 학교급식은 농업을 지키는 핵심이므로 학교급식 관련규정이 기본법에 언급되어야 함.
-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국가 존립의 기본문제이므로 시장논리에 좌우될 수 없는 문제임.

<황연수 동아대 교수>

- 기본법 개정으로 농업·농촌이 국민적 위상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기본법 주체는 소비자·국민이 되어야 함.
- 농업부분 쟁점은 국민을 주체로 인식하면 해결할 가능성이 있고 농민만의 합의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김태곤 농경연 연구위원>

- 기본법 개정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고, 국민·소비자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음.
- 농민·소비자·국민을 포괄하는 공통분모를 찾아 식량공급, 건강책임 등에 우리 모두가 공통인식을 가져야 함.

<전찬익 농협조사연구소 팀장>

-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에 둔다면 농정이 필요 없으므로 소득의 재분배, 공익적 기능 등 차원에서 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함.

<강춘성 농업기술자협회 회장>

- 우리 농업·농촌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인식 바탕 위에서 한국형 농업·농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국민이 바라는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의 의무조항도 필요함.

<지충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충남연합회장>

- 후계농 육성대책이 시급하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법 개정방향이 마련되어야 함.

1.3. 법 개정요구 조사

- 농림부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에 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종합적인 집계표는 <표 4-1>과 같다. 특히 농림부의 관련시책 추진을 위한 주요 개정소요는 다음과 같다.
 - 농업관측 출연금 지원근거 마련
 -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추진근거 마련
 - 농림분야 연구관리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근거 마련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장 도모
 - 농업법인 관련조항 개선(회사법인 출자제한 완화, 지자체의 농업법인 설립자격 부여 등)
 - 농정교육·홍보지원을 위한 조직의 설립근거 마련
 - FTA 확대, 기후변화협약 등 농업관련 협약에 따라 농업분야 대응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신지식농업인 육성 근거 마련

표 4-1.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요구조사 결과

분 야	개정요구 내용(요지)	요청기관
기본이념	· 균형된 소득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문 추가	농단협
	· 식품의 안정적 공급확보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필요성에 관한 조항 신설	농림부 (식품산업)
용어정의	· 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정의 확대 관련 조문 추가	농진청
	·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의 개념 정의 조항 신설	한농연
	· 새로운 농가정의에 관한 조항 신설	농경연
	· 새로운 '농업경영체' 개념 정립에 관한 조항 보완	농림부
	· '농촌'개념의 구체적 명시 및 보완 확대	(농촌정책)
	· 농어촌정비법, 삶의질향상특별법 등 입법례간 통일성 보완	기반공사
	· '농업생산기반선진화종합정비계획'을 통한 안정적 농업기반시설의 종합정비 계획 관련 조항 신설	김우남의 원외 21인
국가, 지방 자치단체, 농업인 책무	· '농촌지역개발' 조문을 '농업인 소득안정, 농촌복지증진, 농촌지역 개발' 등으로 보완하여 종합적 시책수립 및 시행 규정 추가	농협
	·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 조문을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복지 증진'으로 수정 보완	전농
	· '농촌지역개발' 조문을 '농업인 소득안정, 보건복지, 최소농지보존, 농촌지역개발' 으로 확대 수정	농단협
	· 생산자단체가 농업농촌발전 및 농업인 권익신장을 위해 농산물공급조절, 시장개척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의무조항 신설	농경연
	· 생산자단체가 유통가공판매,수급조절,시장개척,수요개발,농자재유통 및 농업인 권익보호에 참여토록 하는 의무조항 신설	한농연
	· 생산자단체가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정치경제사회적 권익신장, 수급조절, 소비진작 등에 참여토록 하는 의무조항 신설	전농
	·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내지 농촌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농업인 직무 관련 조항 보완	농업기술 자협회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및 해외시장개척에 관한 의무 조항 보완	농단협
	·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및 시행 책무 조항 신설	김낙성의 원외 11인

분 야	개정요구 내용(요지)	요청기관
시책수립,시 행기본원칙	· 농업시책 수립·시행시 경제적 효율성 추구, 농업인의 기본권 보장과 국민복지를 위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조항 보완	농업기술자 협회
	· 시장경제원리 바탕의 효율성 추구 조항 삭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조항 보완	한농연
	· 시장경제원리 조항 삭제, 공익적 기능 고려를 통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및 도농교류 활성화 추구 조항 보완	전농
	·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 소득안정 관련 조항 보완	농단협
식량의 안 정적 공급	·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서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으로 조항 일부 수정	농업기술 자협회
	· 세계수급불안요인 대비 국내농업생산 증대 및 수입·비축 수준 관련 조항 신설	농협
	· 현행 조항 삭제, 매10년간 주곡,작목,축종,식품의 중량,열량,금액 기준의 식량자급률목표치 설정 유지를 위한 조항 신설	한농연
	·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정부의 구체적 정책 및 소요예산 확보 관련 조항 신설	
	· 매 5년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에 관한 보완 및 추가예산 확보에 관한 조항 신설	전농
	· 매 5년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자급계획 수립과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명시 관련 조항 신설	
	· 식량자급계획의 기본방침, 품목,작목별 중량,열량,금액기준 식량자급률 목표치, 적정농지·예산확보 등 관련 의무 조항 신설	
	· 정부의 식량자급계획 수립 및 변경시 중앙농정심의회 심의 의무 조항 신설	
	· 정부의 식량자급계획 수립·변경시 국회제출 의무 조항 신설	농단협
	· '식량재고량이 확보' 조문을 '식량재고량 확보와 수급조절'로 조문 추가	
식량자급계획 의 수립 등	· 식량자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의무 조항 신설	김영덕의 원외 21인
	· 식량자급 기본방침 목표률, 목표달성을 위한 제반시책 신설	
	· 식량자급계획을 수립, 변경시 중앙농정심의회 심의 의무 조항 신설	
	· 식량자급계획 수립시 지체없이 국회 제출 의무 조항 신설	
	· 매년 농업농촌 및 세계여건을 반영한 식량자급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변경 관련 의무 조항 신설	

분 야	개정요구 내용(요지)	요청기관
농업구조 개선 촉진	· ‘가공’을 포함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로 문구 수정	농업기술 자협회
	· ‘생산·유통’ 조문을 ‘생산·가공·유통’으로 ‘가공’ 추가	전농
	· ‘생산·유통’을 ‘생산·저장·가공·유통’으로 ‘저장·가공’ 추가	농단협
농촌지역 개발·복 지증진	·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에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연계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조문추가	농업기술 자협회
	·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반’ 관련 조문 추가	전농
	· 농촌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의 생산·정주공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확대	농단협
	·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연계한 지역농업을 육성·발전 시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책무 규정 신설	농협
	· 지역특성이 반영된 지역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책무 조항 신설	전농
	·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교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지원방안 규정 신설	농경연
환경농업육성	· 현행과 같음	
통일대비 농업정책	· 북한농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이고 체계적인 대책수립 및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농경연
	· 통일대비 식량안보 중요성 강조 차원에서 ‘민족 내부거래임’에서 ‘민족 내부거래이자 통일대비 식량 정책임을 인식’으로 조문 수정	낙농육우 협회
	· 북한과의 농업협력을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규정 신설	농경연
	·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 통일대비 목표수준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토록 의무 규정 신설	한화갑의 원등 68인
	·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 인식과 남북한 식량자급 목표수립에 관한 의무 규정 신설	농진청
	· 통일대비 주곡 포함 식량확보를 위한 구체적 목표치 설정 및 국내 농업생산 기반 확보에 관한 의무 규정 신설	한농연
	· 통일대비 식량안보 중요성 인식 및 식량수급 상황 고려를 통한 적정 식량자급 목표 달성에 관한 의무 조항 신설	낙농육우 협회
	· 정부는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 인식과 식량수급상황을 고려한 적정식량자급목표 달성에 관한 의무 규정 신설	전농
	· 통일대비 북한인구까지 포함하는 식량자급정책 준비규정 신설	농단협
가족농의 경영안정	· ‘정부는’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시행 주체 확대	농림부 (경영인력)

분 야	개정요구 내용(요지)	요청기관
	· 가족농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영농의 다각화관련 조문추가	농업기술 자협회
	· ‘정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으로 시행 주체 확대	전농
농업농촌 다원 적가치 확산	· 농업농촌의 가치, 중요성,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농업정책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시책 추진 조항 신설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필요 시책 마련 조항 신설	농림부 (경영인력)
후계농업경 영인 육성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금지원,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 시행 의무 조항 수정 ·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의무 조항 신설	한농연
전업농업 인육성	· ‘전업농업인’에서 ‘전문농업인’으로 용어 수정 · 전문농업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자금지원, 기술·경영교육 등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 규정 신설	농단협
여성농업 인육성	· 현행과 같음	
신지식농 업인 등	· 신지식농업인을 선도농업인, 전업농업인과 구별되는 주체적 개체로서 규정하고 육성에 관한 의무 규정 신설 · 자금자족하고 농촌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생활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의무 규정 신설	신지식농 업인회 농업기술 자협회
영농조합 법인육성	·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에서 ‘자유로이’로의 조문 수정을 통한 법인에 대한 기본방향 법에 규정 · 법인 개념의 영농조합법인 조항을 삭제하고 영농조합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시행 규정 신설 · 영농조합법인의 가입, 설립, 출자, 해산, 등기 등 관련 조항 삭제	농경연
	· ‘출하·가공·수출 등을’에서 ‘출하(생산)·가공·수출 또는 농촌관광휴양사업 등을’으로 추가 보완	농림부 (농촌정책)
농업회사 법인육성	·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하는 자’ 부문에 ‘또는 농촌관광 휴양사업 하고자 하는 자’를 추가 보완 · 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관광 휴양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	농림부 (농촌정책)
	· 지방자치단체를 농업경영체에 포함 시킴으로써 농업법인 설립이 가능토록 조항 수정	농림부 (경영인력)
	· 법인에 대한 기본방향만 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법률로 규정토록 조항 수정 · 농업법인의 가입, 설립, 출자, 해산, 등기 등 각 조항 삭제	농경연

분 야	개정요구 내용(요지)	요청기관
농업인경영혁신·자금지원	·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지자체에서 지원도록 조항 수정	농림부 (경영인력)
	· ‘정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여 업무 이양 추진	전농
	·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목적을 둔 ‘지역농업의 조직화’ 시행 의무 관련 조항 신설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경영체와 산학연간 협력 및 상승효과 도모를 위한 시책수립 시행에 관한 의무조항 신설	농경연
농업 관련 단체 육성	· 농촌관련단체의 육성 부문이 포함된 ‘농업·농촌관련단체의 육성’으로 분야 확대	농업기술 자협회
	· ‘소요비용, 시설, 물품, 용역서비스 등’ 항목 추가를 통한 농업관련단체 지원의 구체적 내역 명시	한농연
	· 농업인 요구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무 규정 추가	농단협
농지에 관 한이념	· 현행과 같음	
농지 소유 · 이용	· 현행과 같음	
농지의 보전	· 농지의 적정규모는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를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는 의무 규정 추가	한화갑의원 등 68인
	· 식량적정 자급목표 달성 및 국내 농업기반 보호 등을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농지를 유지하는 의무 규정 추가	농진청
	· 농지의 적절한 규모 유지를 위한 구체화 규정 추가	낙농육우협회
	·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량의 적정자급 목표 등을 고려한 농지 보전 관련 규정 수정	전농
	· 농지보전과 국민농원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 신설	농업기술 자협회
	· 농지보전, 식량공급, 환경보전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금전적 보상이 담보된 의무 규정 신설	한농연
	· 보전이 필요한 농지의 농업인 소유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의무 규정 신설	농단협
	·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의 선진화를 위한 시책 의무 규정 추가	기반공사
농업생산기 반의 정비	· 종합정비계획을 농촌용수구역단위로 수립하고 매 5년마다 농지의 변동과 지역개발에 따른 보완 의무 규정 신설	
	· 생산기반 사업 시행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광역자치단체별 매 5년마다 1개구역을 선정 및 집중 투자에 관한 의무 규정 신설	

분 야	개정요구 내용(요지)	요청기관
	· 선정 시행 지구별 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지원 관련 의무 규정 신설	
경 영 규 모 적정화	· ‘생산성 향상’ 조문을 삭제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득 안정’에 관한 조항 추가	농업기술 자협회
농업기계 화 촉진	· 가족농 중심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관련 조문 추가	농업기술 자협회
	· 농기자재 가격 안정에 관한 의무 조항 추가	농단협
농업과학 기술진흥	· 현행과 같음	
벤처농업 육성	· 현행과 같음	
지적재산 권등 보호	· 현행과 같음	
농업농촌 정보화	· 현행과 같음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의 추진 및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농림부 (정보화담당)
	· 유관기관별 정보제공 및 협조의무 부여와 정보수집 및 농림사업 통합관리를 위한 규정 조항 신설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의 추진조직 신설에 관한 조항 신설	
	· ‘농산물 전자상거래’ 홍보 관련 조항 신설	김우남의 원의 21인
농업기술 개발사업	· 현행과 같음	
	· 농립R&D 정책기능 강화와 개발된 기술활용 촉진을 위하여 ‘한국농립기술평가원’ 설립 근거 조항 신설	농림부 (농업기술지원)
농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 농업관측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	농림부 (통계기획담당)
	·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방안에 관한 규정 추가	한농연
	· 수출입 농산물 동향과약 및 생산자 단체 자조금 조성 근거 규정 추가	농단협
농산물 유통개선	· 현행과 같음	
	·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시 정부지원 근거 관련 규정 신설	농협

분 야	개정요구 내용(요지)	요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 경영의 직거래 센터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추가 ·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및 유통교육 등에 농업인 및 작목별 단체를 포함하는 규정 추가 	농단협
농산물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기반선진화를 위한 수계별 오피수 유입현황 및 해소대책에 관한 의무 조항 신설 	기반공사
농산물가공 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식품산업 및 농업의 공동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조항 추가 	농림부 (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개발 및 가공시설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 추가 	농단협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와 이익’에서 ‘농업의 권리와 이익’으로 한정하여 수정 	농단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농업정책에 관한 정보 교류와 관련하여 조문 추가 	농림부 (국제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학기술 진흥 및 개발도상지역의 농업·농촌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추진 의무 규정 추가 	농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피해 사전대책 수립 및 협상추진관련 의무규정 신설 · 협상 및 대책 수립시 농업인대표 및 생산자 단체 참여 및 심의에 관한 의무 규정 신설 	한농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단체의 농업정책관련 교류 및 국제기구활동 참여시 지원 근거 관련 조항 추가 · 농업통상협정 추진 이전 영향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의무 규정 신설 	전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FTA,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변화 관련 대응 및 지원 근거 규정 신설 	농림부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식량 수급 및 개발도상지역 농업·농촌진흥 도모와 기술 및 자금 협력 추진, 기술원조 공여 등 국제적 의무수행 의무 규정 신설 	농진청
농산물 수출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농산물의 수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농촌지역 개발시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의 특수성’에서 ‘농촌 지역의 특수성’으로 농촌지역의 특수성 고려에 관한 조항 추가 · ‘농촌다움’ 등 농촌의 어메니티 관련 조항 추가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조항 추가 	농림부 (농촌정책)
		전농

분 야	개정요구 내용(요지)	요청기관
	·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복지증진·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대책 추진 의무 조항 신설	농림부 (농촌정책)
농촌지역산업 진흥개발	·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향토자원의 산업화 육성 관련 의무항 신설 · 농촌의 경관 유지·보전에 대한 대책 추진 근거 조항 추가	농림부 (농촌정책)
농업인의 소득증대	· 농업인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농촌지역 활성화 관련 조항 보완 · 농촌경관 보전 등을 위한 지원 조항 신설 · 농업진흥지역 경작농업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농림부 (농촌정책) 농협 한농연
	· 농업인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농촌지역 활성화 관련 조항 추가 · 농촌경관보전 지원 및 농업진흥지역 경작농민 보상 관련 조항 신설 · 농지보전, 농업기계화 촉진, 농촌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조항 신설	전농 농단협
농업재해	· 현행과 같음	
농업농촌 발전계획	· '자급목표'에서 '자급목표 및 자급률'으로 식량의 자급률 관련 조항 추가 · 주곡을 포함한 모든 작목,축종,식품에 관한 구체적 중량, 열량,금액 기준과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관한 조항 추가 ·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를 '식량자급계획'으로 명칭 변경 · 기본계획 변경사항 발생시 국회 보고를 통한 감시 기능 강화 관련 조항 추가 · '기본계획 수립'에서 '기본계획 수립변경'으로 조항 보완	농진청 한농연 농단협 농진청
	·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조항 삭제	잔농 김영덕의 원등21인
	· 법 시행일 1년이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구속력 구비 조항 추가	한화갑의 원등68인
	· 상 동	낙농우협회
농업농촌발전계획 변경	· 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제출에 관한 조항 신설 · 상 동	한화갑의 원등68인 낙농우협회
식량자급률 표시	· 식량자급률의 구체적 표시 및 목표수치에 관한 강제 및 의무 조항 신설 · 상 동	한화갑의 원등68인 낙농우협회

분 야	개정요구 내용(요지)	요청기관
농 정 심 의 회	·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변경시 농정심의회 심의·의결에 관한 의무 규정 신설	한농연
농업농촌발전계획 효율적추진	· 현행과 같음	
농 정 연 차 보고서	· 기본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및 보완사항을 포함하는 심의 의무 규정 추가 · 지자체계획 및 농정시책 등의 추진실적과 평가·보완사항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조항 수정	한화갑의원 등 68인
	· 상동	전농
준 농 촌 지 역 지원	· 현행과 같음	
조세감면	· 현행과 같음	
권한의 위임	· ‘농업생산기반선진화종합정비계획’ 수립 권한에 대한 농업기반공사 위임에 관한 규정 신설	기반공사
교 육 · 홍 보 지원	·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등의 발굴연구,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업무지원을 추진할 전문조직 설립근거 신설	농림부 (경영인력)
부 칙	· 지자체가 농업활동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자료: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과 취합자료를 정리함.

2. 농정 여건 변화와 농업·농촌종합대책

2.1. 농업·농촌의 여건

- 최근의 칠레와 FTA 협정 체결 및 다른 국가와의 무역자유화 협상 진전, WTO 쌀 관세화유예 협상의 타결과 DDA 협상의 진전 등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의 폭과 속도의 확대 불가피하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역경제블록을 형성해 가는 상황이다.

-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특단의 자구 노력과 지원책이 없다면 호당 도·농간 소득격차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농촌의 고령화 현상도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규모화·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경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경영체일수록 생산성 향상 및 소비둔화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불안정,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의 경영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최근 들어 농가의 차입자본 비중이 높아 경영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 식품안전,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등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소비자는 가격보다는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농업에 대해서도 고투입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저투입 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IT·BT 등 지식·기술혁명이 가속화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되고, 모든 분야에 IT 기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지방 분권화의 영향으로 지방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있다.
- 전원·휴식공간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주 5일제 근무확산 등에 따라 국내관광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따라서 고속도로망 등을 잘 활용하면서 농촌다움을 지켜나간다면 미래 농촌은 쾌적한 거주·휴식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다.

2.2. 참여정부의 농정 패러다임

-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 정부(참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농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시장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복지정책과 직접지불제를 양축으로 ‘농촌·농업·농업인’ 정책 상호간 연계성을 높여 농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며,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개발 및 복지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정 패러다임의 골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농업 중심에서 농업·식품·농촌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기존에 농업부문에 편중된 정책의 관심을 농업과 식품산업, 농촌지역 개발 등으로 정책의 외연을 넓혀 개방화 시대의 농업·농촌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 둘째, 전체 농가의 평균적 지원에서 농가 유형별로 정책을 차별화하는 방향이다. 모든 농가에 대한 무차별적 경쟁력 제고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경쟁이 가능한 농가 중심으로 정책자원이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영세·고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 보완대책도 추진하며, 특히 농업인 복지·농촌관광 등 농외소득원을 확충하여 재촌탈농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 셋째, SOC 중심 투융자에서 소득·복지·지역개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육성, 직불제 등 소득안정과 농촌 지역개발에 중점 지원하며, 생산기반정비는 축소하되 노후시설 개보수·배수개선 등 재해예방 위주로 내실화하는 것이다.

- 넷째, 정부 주도과 가격지지에서 시장지향의 소득보조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에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개별 품목의 수급과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에 관측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문제는 가격지지정책 보다는 다양한 직접 지불제 도입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 다섯째, 생산 중심에서 소비자와 안전·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고품질의 표준화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여섯째, 농촌을 농업생산 공간에서 생산+정주+휴양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이다.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정부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높여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농촌개발로 전환하는 것이다.

2.2.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 참여정부는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농정방향을 구상하였으며, 특히 FTA, DDA협상, 쌀협상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정부는 2004년 2월 23일 대통령 주재의 ‘농업·농촌종합대책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2013년까지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19조원 투융자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9대 핵심 농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쌀 산업은 6ha 수준 7만호, 축산업은 2만호의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를 고령농이 1ha 경영이양시 월 24만 1천원씩 최장 8년간 지급하는 연금식으로 개편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며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영이양을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원예산업은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하고, 품목별 생산자를 전국 단위로 조직화하여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둘째, 매년 35세 미만의 신규 창업농 1천명('13년까지 1만호)을 선정하여 이들을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선정된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자금을 2억원까지 지원하고, 농업인턴십제도 및 지방대 교수를 활용한 창업농후견인제도로 이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한다. 또한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사업성을 심사·평가하여 매년 3,500명을 선정하고 종합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셋째,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2003년 9.4%인 직불제 예산 비중을 2013년에는 23%까지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사과·배 등 6개 품목에서 시설채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하고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매년 2천억원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재해와 가격불안정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조기회생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넷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해 GAP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채소, 과일, 쇠

고기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도 200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HACCP제도를 사육에서 판매 단계까지 전 과정에 확대 적용하고,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 다섯째,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보다 40% 감축한다. 유기질 비료공급을 늘리고, 천적과 미생물을 활용한 농법 확산으로 소비자가 만족하고 국토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현재 3% 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까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 여섯째,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생명공학의 활용으로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충하초와 같은 기능성 식품으로 농가소득을 크게 올린 사례처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등 필요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일곱째,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2013년에는 우리 농산물 수출 5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에 특화된 생산·물류·브랜드체계를 강화하고, 고품질 농식품으로 일본과 중국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 여덟째, 연금보험료 지원을 2003년 연간 8만 6천원에서 2005년 이후에는 최고 25만 7천원까지 인상하고, 현재 22% 수준인 건강 보험료도 2006년에는 5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 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1.5ha 미만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인프라를 크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아홉째, 농촌마을종합개발과 농촌관광마을개발 등 농촌지역개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2013년에는 전 국민의 20%가 농촌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194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주변 3~5개 마을을 “농촌마을종합개발”로 묶어 권역당 약 70억원을 지원하며, 자연경관, 전통문화, 향토문화축제 등 농촌 부존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농촌관광마을을 2013년까지 1,000개소 조성한다. 또한, 농촌에 사람과 자본의 유입으로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미 시행중인 농촌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지방세의 중과세 배제에 이어,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도시민의 농협출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농정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농업인과 국민들로부터 농정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지난 11년간('92~2002) 중앙정부가 투융자한 규모의 2배 수준인 119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투융자의 우선 순위는 소득 및 경영안정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2003년 20.7%에서 2013년에는 30%까지로 늘리고,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분야도 같은 기간 중 8.6%에서 17.2%로 확대하되, 이미 상당 수준 투자가 이루어진 생산기반 조성분야는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 타당성을 엄격히 평가한 후 지원되도록 하여 정부 지원이 농가 부채화되지 않도록 하고, 변화하는 농촌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투융자 계획도 3년마다 평가하여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 5 장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방향

- 이 장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 특히 농업·농촌기본법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시책을 검토하면서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의 성격 재정립

1.1. 기본법 제정의 동향

- 기본법은 법 적용의 범위에 의한 개념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법이다. 기본법은 근본법(fundamental law)이라고도 불리는데, 국가의 대표적인 기본법은 헌법이며, 따라서 분야별로 제정된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관련법의 모법으로서의 성격이 주어진다.
- 정부 수립 이후 37개의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그중 1990년 이후 28개), 그 동안 3개 법률이 폐지되어 현재 34개 법률이 운용되고 있다. 맨 처음 제정된 기본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이고, 농업기본법은 두

번째로 제정되었다. 최근 제정되는 기본법은 실용주의화하는 입법 경향으로, 대부분이 시행령을 가진 집행적 내용을 담고 있다.

- 농업분야 이외의 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기본법(1966.12.6제정, 전문개정1995.1.5 법률 제4897호):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 관광기본법(1975.12.31. 법률 제2877호):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 환경정책기본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
 - 교육기본법(1997.12.13, 법률 제5437호):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산림기본법(2001.5.24, 법률 제6477호):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해양수산발전기본법(2002.5.13, 법률 제6700호):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

표 5-1. 우리나라의 기본법 제정 내역

법률 명칭(제정 연월일, 연번)	시행령 유무	비 고
중소기업기본법(1966.12.6제정, 전문개정1995.1.5 법률 제4897호)	○	
농업기본법(1967.1.16. 법률 1871호)	×	1999년 폐지
국세기본법(1974.12.21, 법률 제2679호)	○	
민방위기본법(1975.7.25, 법률 제2776호)	○	
관광기본법(1975.12.31. 법률 제2877호)	×	
직업훈련기본법(1976.12.31, 법률 제2973호)	○	1997년 폐지
언론기본법(1980.12.31, 법률 제3347호)	○	1987년 폐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12.31, 법률 제3690호)	○	
전기통신기본법(1983.12.30, 법률 제3685호)	○	
환경정책기본법(1990.8.1 법률 제4257호)	○	
청소년기본법(1991.12.31, 법률 제4477호)	○	
고용정책기본법(1993.12.27, 법률 제4643호)	○	
영상진흥기본법(1995.1.5, 법률 4882호)	○	
정보화촉진기본법(1995.8.4, 법률 제4969호)	○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법률 제5134호)	○	
여성발전기본법(1995.12.30, 법률 제5136호)	○	
건설산업기본법(1996.12.30, 법률 제5230호)	○	
자격기본법(1997.3.27, 법률 제5314호)	○	
행정규제기본법(1997.8.22, 법률 제5368호)	○	
교육기본법(1997.12.13, 법률 제5437호)	×	
농업·농촌기본법(1999.2.5, 법률 제5758호)	○	
국가표준기본법(1999.2.8, 법률 제5930호)	○	
전자거래기본법(1999.2.8, 법률 제5834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1999.2.8. 법률 5927호)	○	
보건의료기본법(2000.1.12, 법률 6150호)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2001.1.8, 법률 제6347호)	○	
과학기술기본법(2001.1.16, 법률 제6353호)	○	
산림기본법(2001.5.24, 법률 제6477호)	○	
근로자복지기본법(2001.8.14, 법률 제6510호)	○	
국토기본법(2002.2.4, 법률 제6654호)	○	

법률 명칭(제정 연월일, 연번)	시행령 유무	비 고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2002.5.13, 법률 제6700호)	○	
인적자원개발기본법(2002.8.26, 법률 제6713호)	○	
소방기본법(2003.5.29, 법률 제6893호)	○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03.7.29, 법률 제6955호)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57호)	○	
건강가정기본법(2004.2.9, 법률 제7166호)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04.3.11, 법률 제7188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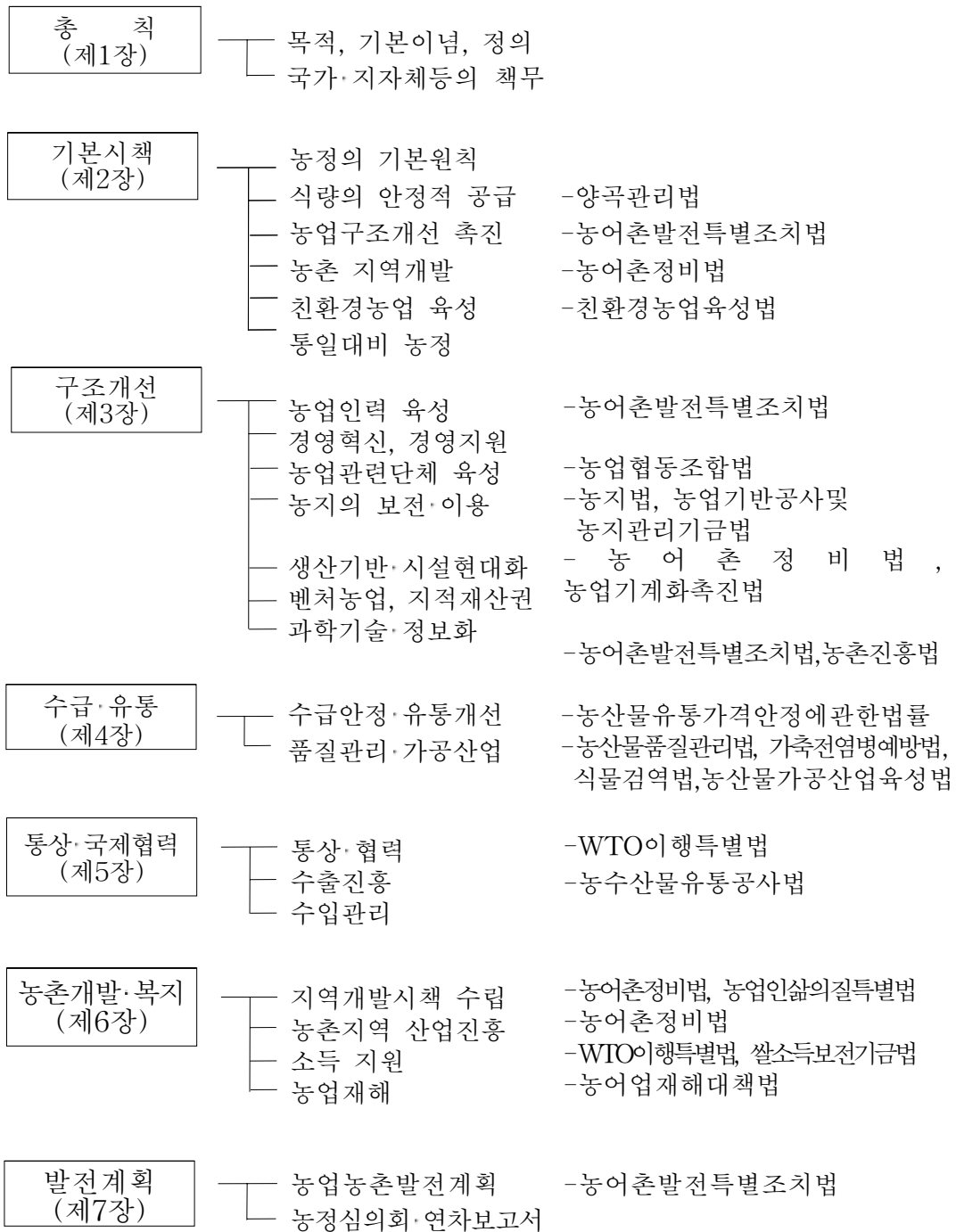
1.2. 농업·농촌기본법 체계의 문제점

-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기본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합하는 형태로 제정되어 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업·농촌기본법이 법 체계상의 부조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은 구 농업기본법(1967)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형식으로 제정됨으로써 법조문(조, 항, 호)의 규정 수준이 일관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현행 농업·농촌기본법 제15와 제16조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총 15개의 항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항에 비하여 농업법인 제도가 상대적으로 농정의 중요한 분야라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 둘째, 농업·농촌기본법이 선언적 규정과 집행적 규정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 법률의 구성상 제1장 총칙과 제2장 기본방향은 선언적 규정으로,

제3장 이후의 분야별 시책은 집행적 규정으로 성격이 구분되어 있으나, 제2장 기본방향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기본이념(제2조) 및 분야별 시책의 주요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이념이나 분야별 시책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농산물 유통과 식품산업, 통상과 국제협력 등도 기본방향에서 언급되어야 할 사항이다.

- 셋째, 농업·농촌기본법이 정책의 추진주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 농정시책의 추진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농림부장관 등으로 나누어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 제7조에서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11조에서 가족농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제13조에서는 전업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림부장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다. 따라서 농정 주체를 국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각각의 기능과 책무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농업·농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된 규정으로 영성한 법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 기본법이 너무 구체적이고 탄력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지난 3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법률 1개 조항, 시행령 10개 조항, 시행규칙 5개 조항이 삭제된 상태이다.
- 넷째, 농업·농촌기본법이 하위법과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농업·농촌 분야의 50여 개의 하위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모법과 하위법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림 5-1. 농업·농촌기본법의 주요 하위법



1.3. 농업·농촌기본법의 성격 재정립 방향

- 첫째,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관련 법률의 모법으로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정의 원칙과 중장기 방향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추상적인 이념이나 방향 제시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법에 근거하여 하위법이 제정되고, 아울러 농정분야의 제반 법률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농업관련 법률의 대부분이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이전에 공포되었거나, 또는 기본법 정신을 반영하는데 소홀하였다는 점에서 관련법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둘째, 농업·농촌기본법의 성격으로서 선언적 규정과 집행적 규정의 조화가 필요하다.
 - 농업·농촌기본법의 선언적 규정은 농정의 원칙을 선언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된다.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정의 이념과 방향 등은 선언적 규정일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선언적 규정이 개별 시책이나 하위법 등에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따라서 제2장의 기본방향은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선언적 조항으로 재정립하고, 제3장 이하의 개별 시책에서 집행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행적 규정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관련된 하위 법률의 무원칙·무질서한 개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농업·농촌기본법이 법률의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과 농촌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경제입법으로서 각종 시책이 탄력성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법

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장기 목표만이 아니라 중기적인 시책을 규정하여 필요시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특히 농업·농촌발전계획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면서 법 개정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4. 농업·농촌기본법 체계의 정비 방향

- 농업·농촌기본법이 명실상부한 기본법으로서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 첫째, 농업·농촌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 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기술 수준(일부 시행령적 표현)을 통일하는 문제이다. 현재 선언적 규정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집행적 규정에 대해서는 항과 호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조문 자체만으로도 상대적인 경중이 부여되는 듯이 보이며,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될 사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필요한 규정이 가능한 한 법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법 제3조의 용어 정의에서 농업이나 농업인은 법 자체로도 어느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농촌’의 정의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장관 고시에 전부 위임함으로써 법률 이용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이 지적되므로, 가능한 한 법에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 둘째, 농업·농촌기본법의 하위법으로 이관하여 개별법을 제정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시책의 기본방향과 근거만을 규정하고 하

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현행 기본법 제15~16조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법 개정시는 농업법인 제도의 법적 근거만을 규정하고 ‘농업경영체 활성화 지원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세부사항(목표 기준, 산정 방법 등)을 법에서 어느 수준까지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요컨대 법에서 너무 상세하게 규정하여 탄력성을 상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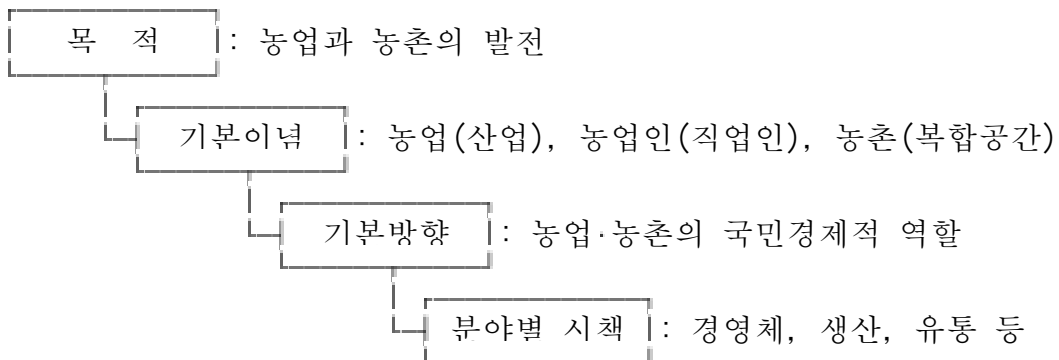
- 셋째, 농업·농촌기본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농업·농촌기본법은 그 자체로는 농정의 목표나 방향, 수단 등에 관하여 매우 추상적인 내용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기본법에 의한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법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지니는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개념이나 용어를 규정한 부분은 관련법에서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농촌의 정의가 다른 법률에서 변형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집행 가능한 문구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농업·농촌기본법이 법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실효성을 가져야 하는 조항은 제42조 농업·농촌발전계획, 제45조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규정이다. 특히 제42조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서는 국회 및 지방의회의 점진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45조의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단지 실적 보고가 아니라 농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농정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업·농촌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적 규정에 대한 하위법 제정 및 관련법률 정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농업과 농촌에 관련된 법률이 50여 개나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법률이 농업·농촌기본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

-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의 구성은 목적, 기본이념, 기본방향, 분야별 시책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기본법의 개정 방안을 검토하는 절차로서 장별 구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향에서 세부 내용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농업·농촌기본법의 목적에 근거하여 기본이념에서 농업과 농촌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이 제시되고, 다음으로 이러한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농정에 관하여 시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되며, 나아가 시책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분야별로 세부 시책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림 5-2.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의 검토 절차



2.1. 목적에 대한 검토

-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농업·농촌기본법이 ‘국가의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것만이 아니므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따라서 제1조의 목적을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 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2.2. 기본이념에 대한 검토

- 농업·농촌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농업과 농촌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좀 더 구체화하는 부분으로서, 농업·농촌의 본질적인 국민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선언하고 아울러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농업경제학에서는 농업·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①국민식량의 안정적·효율적 공급, ②국토자원·환경의 보전과 유지, ③농촌인력의 고용, 소득기회 제공, ④농촌사회의 규모와 기능 유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농업·농촌기본법에서도 이들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현행 농업·농촌기본법 제2조는 기본이념에 대하여 산업으로서의 ‘농업’, 경제주체로서의 ‘농업인’, 지역공간으로서의 ‘농촌’으로 구분하여 각각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국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서 윤택한 삶의 질을 도모해야 한다.
- 농촌은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2.3.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

- 기본방향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으로서, 정부 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 현행 농업·농촌기본법 제2장에서 농업·농촌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시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제5조), 국민식량의 안정공급(제6조),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제7조),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제8조),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제9조), 통일대비 농업정책(제10조) 등으로 구성되었다.
- 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소비자·국민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품질, 안전 등)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임무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민의 욕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기능과 다원적 기능 극대화라는 농업·농촌의 국민경제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농업 발전의 기반인 농촌지역사회의 유지·발전 역시 중요한 농정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농촌시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은 다섯 분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안전한 식량·식품의 안정적 공급
 - 식량자급목표 설정, 국내 생산을 기본으로 수입과 비축의 적절한 조절
 -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
 -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 ② 다원적 기능 발휘
 - 국토 보전, 수원 함양, 자연생태 보전, 경관 형성, 문화 전승 등에 기여
 - 농촌에서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다원적 기능은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③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 건실한 경영체 육성, 지역농업 활성화 등 농업구조 개선
 - 농산물 유통합리화,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 환경농업 등 자연순환 기능 유지
- ④ 농촌 진흥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 농업생산기반 정비: 생활공간과 조화
 - 농촌생활환경 정비: 농촌다움(rurality)과 쾌적성(amenity)의 조화
 - 농업인 복지 시책
- ⑤ 통일대비 농정
 -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조사연구 추진
 - 농업부문 교류협력

2.4. 분야별 시책에 대한 검토

(1)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 농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 정비해야 한다.
 - 현행 규정(법 제3조 제1호)에서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 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의 범위가 생산 분야에 치우쳐 있으므로 농업의 소득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점차 관련산업으로 확대시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농림부의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대책 일환으로 ‘농촌관광’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수혜의 실효성에 제약이 된다.
 - 따라서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생산업과 축산업으로 규정하되 관련 산업(농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 농업관련 서비스, 농촌관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농업인과 그 가족경영체인 ‘농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농업경영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농업경영 단위가 아니므로, 가족농업경영체인 ‘농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농업경영체로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행 농업인 정의에는 농업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농업관련산업 종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농업경영체로서의 ‘농가’ 정의가 별도로 정립되어야 한다.
 - 농업·농촌기본법 체계에서 ‘농업인’은 농업경영자 및 종사자, ‘농가’는 농업인의 가구, ‘농업법인’은 농업인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는 농가와 농업법인 그리고 기타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체 등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촌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의 군 및 통합시로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현행 규정(법 제3조 제5호)에서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도 “중앙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학술적으로 농촌지역은 군지역과 광역시 및 도·농통합시의 읍면지역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읍·면 전지역 및 동 지역 중에서 도시적 용도지역 이외의 지역”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농촌정책의 대상은 단순한 행정구역 기준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널리 채용되는 인구밀집지구(Densely Inhabited District, DID)방식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국가와 지자체의 농정 기능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 법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역할 분담이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후 지방농정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미약한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자치농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 단위의 종합적인 행정기능상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지방으로 위임하고,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된 농정의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문화하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역농정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이나 정책기준의 제시 등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국가는 식량안보와 다원적기능 유지, 농가소득 안정, 식품안전성 확보, 시장지향적 제도정비 등에 주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 진흥, 농촌지역 개발, 주민복지 등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농정 추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의 책무를 규정해야 한다.
 - 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정 추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생산자단체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파트너로서 많은 기능이 부여될 것이므로, 이에 걸맞는 생산자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제4조 제2항으로 생산자단체 규정을 추가하여 생산자단체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산물의 공급조절, 시장개척, 수요개발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 식량자급률은 국가적 목표로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식량자급 규정은 농업·농촌기본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회나 농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다. 즉, 법 제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42조에서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시에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한 조항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을 포함한 식량자급계획의 수립에는 이러한 자급률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1999년에 상당한 논의를 거쳐 입법화된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①제6조의2를 신설하여 ‘식량자급에 관한 기본계획’에 규정하는 방법과, ②제42조의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규정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일대비 농정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 2005년 8월에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북한과의 농업협력을 위한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남북교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대비 농업관련 조사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농업통상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주체의 역할과 지원시책 등을 규정해야 한다.
 - DDA협상, FTA 등에 대응하여 농업통상 및 국제협력의 기본방향과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방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비롯하여 생산자단체가 추진하는 자조금 조성 등에 대해서도 기본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고 외국의 농업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아울러 이러한 대외협상 및 국제교류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농림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관련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야 한다.
 - 현재 농림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당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비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농림기술개발사업, 농업관측사업, 농림통합정보시스템 개발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연구관리전문기관과 농정홍보기관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업인단체가 수행하는 교육·훈련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추가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

- 지역농업과 지방농정의 강화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체가 성숙되면서 지역의 역사·문화·전통 등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농업 전략이 모색되는 추세이며,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농정 기구를 구성하고 지역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평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농업을 위한 지방농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중앙농정과 지방농정 그리고 전국농업과 지역농업이 서로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농정 추진주체의 파트너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농업과 지방농정의 다양성 및 창의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생산조직 및 산지유통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농업조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새로 도입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고양하고 농촌지역사회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촌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농촌개발정책은 다원적 농촌 발전을 목표로 종합적 지역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지역정책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①지역(territory)을 범위로 하여 건설, 교통, 농업, 서비스 등 각 부문 정책들이 지역의 전체적 종합계획 아래 통합되어야 하고, ②농업생산 기반조성, 환경농업, 농촌관광 등 종래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수단 간에도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③농촌관련 정책 추진기구도 통합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④중앙과 지방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주민간의 파트너십과 정책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현행 기본법에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로서 생태·환경·경관 등 농촌의 가치 재발견, 귀농이나 도시민 이주 등 인구 유입 대책, 농촌지역 혼주화에 대응한 공간 정비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개방 진전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의 발전을 위한 식품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 오늘날 우리의 식생활은 농업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 이외에 식품공업이 생산하는 가공식품, 농산물의 보관·수송·매매를 담당하는 유통서비스와 외식산업이 제공하는 외식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식량·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농정 목표는 이들 일련의 활동을 포함하는 푸드시스템(food system)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현행 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이 미흡한 소비자 보호 및 농식품 소비에 관한 시책,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등의 규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2004년 현재 15세 이상 농업 주종사자 가운데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5.8%이며, 여성 농업경영주는 20만 7천명으로 전체 경영주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농업인의 농업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는 분명하지 못하다. 현행 농업인 정의는 여성농업인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여성농업인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실질 경작자로서 여성이 법적 농업인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지기반 없이 농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의 법적 지위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후계농업이나 여성농업인이 가족농이라는 틀 안에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족협정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법 제11조를 개정하여 가족농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 가족간의 ‘가족경영협약’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 고령화 진전에 따른 농촌형 사회복지 체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3년 현재 60세 이상 농가인구는 남자가 62만 5천명으로 전체의 17.7%, 여자가 75만 2천명으로 전체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은 인구밀도가 낮고 노인 인구비중이 높으며, 대체로 문화·보건·복지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불리성을 보완하는 농촌형 복지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농업인의 복지와 관련하여 최근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모법적 성격의 규정이 필요하다.

부록 1: 농업·농촌기본법령 전문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1999. 2. 5 법률 제5758호]

[개정 2003.12.11 법률 제699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유투입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책무<개정 2001.3.2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영혁신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제2장 농업·농촌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 (시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유지하며 적정한 식량재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일대비 농업정책) ①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 농지 및 농산물유통제도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남북한간의 농산물거래는 민족내부거래임을 인식하고 남북한간 농업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농업구조개선

제1절 농업인력의 육성

제11조 (가족농의 경영안정) 정부는 가족노동력을 주축으로 한 가족농의 생산성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전문화·협동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개정 2003.12.11>) ①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농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03.12.11>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자금지원,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제13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4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⑥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⑧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제16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

립할 수 있다.

-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③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자문·교육훈련 및 정보제공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농업관련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등 농업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19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써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제20조 (농지의 소유와 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농지의 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22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생산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농업기계화등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농업자재·농업시설의 연구·개발·보급과 그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등 농업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벤처농업등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분야의 첨단과

학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보급하며,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농업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27조 (지적재산권등의 보호) ①정부는 농업유전자원, 영농기술, 상표 등 유·무형의 농업관련분야의 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제29조 (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실용농업기술, 농업관련 생산기술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등으로 하여금 농업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등에게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제30조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관측, 생산조정, 수매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조성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농산물의 유통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농산물의 생산지와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등 다양한 유통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등 물류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및 유통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농산물의 품질관리등) ①정부는 농산물의 상품성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표시 및 품질관리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과 동식물에 대한 검역 및 위생검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조화로운 발전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의 연구개발,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

제34조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농업통상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업분야의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농업정책에 관한 정보 및 농업인력·기술의 교류, 농업관련 국제기구활동에의 참여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업투자환경조사등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농산물의 수출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우리 식문화의 전파등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

집·제공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 (농산물의 수입관리) 정부는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

제37조 (농촌지역개발시책의 수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물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도·농간의 교류확대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개최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1. 영세농등을 위한 지원
2. 토양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6.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제40조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한해·수해·풍해·냉해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응급대책·복구와 농업재해보험, 공제제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2001.12.31>

제7장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추진

제42조 (농업·농촌발전계획) ①농림부장관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8>

1.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3. 농업·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구체적 내용
4. 그 밖에 농업·농촌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③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이하 "시·

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⑤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제43조 (농정심의회) ①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기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농정심의회를, 시·도에 시·도농정심의회를,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둔다.

②각 농정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농업·농촌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 ①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정부는 매년 농업·농촌동향과 농정시책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당해 지역의 농업·농촌동향과 농정시책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각종 농업시책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6조 (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촌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 (권한의 위임등) 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 <2001.12.31>

부 칙 <제5758호, 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기본법
2. 농산물가격유지법
3.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3조 (농업인후계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후계자 또는 임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업농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본다.

제6조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제7조 (농지전용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본다.

제8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표의 농임지역란의 제1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란의 제5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각각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고, "동법 제44조"를 "동법 제34조"로 한다.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한다.

④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노동시간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전업어업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업에 관한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어업인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어업인후계자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제6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7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로 한다.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기본방침"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8조 및 제4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48조 내지 제52조)을 삭제한다.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10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 개발위원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⑥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⑦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⑧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⑨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의 개발

⑩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⑪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농·어업인을"로 하고, 동조제4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⑫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⑭식물방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

임업인 및 농·임산물의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⑮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16>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17>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18>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19>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267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6447호, 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담관리기본법) <제6589호, 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 당시 농업·농촌기본법 종전의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및 ④생략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업·농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 칙 <제6997호, 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계농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전단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항 본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5호중 "농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규정의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인후계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정 1999.12.28 대통령령 제16646호]

[개정 2004. 4.24 대통령령 제1837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생산업: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영임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제3조 (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4, 2003.4.7>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2. 삭제 <2000.3.24>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

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5. 삭제 <2000.3.24>
6. 기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 (농촌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 (기타 농산물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7조 삭제 <2004.4.24>

제8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한 사항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성명과 주소
4.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이전 및 변경등기) ①영농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조합원의 자격)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4.7>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

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제11조 (생산자단체에의 가입) 법 제15조제4항(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읍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3.24>

제12조 (조합원의 출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3조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4조 (정관기재사항) ①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4.7>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영농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영농조합법인이 합병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해산등기 등) ①영농조합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 <2004.4.24>

제17조 (관할등기소) ①영농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8조 삭제 <2004.4.24>

제19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20조 (비농업인이 출자한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 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4.24>

제21조 (부대사업)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제22조 (정관례의 작성)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분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와 그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발한 기술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제24조 (농업기술개발사업)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을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4.4.24>

1. 농업생산·유통 및 가공과정 등에 직접 이용되는 실용기술연구
2. 환경공학·신소재개발기술 및 자동제어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3. 기타 벤처형 중소기업지원기술개발 등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②농림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 등 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2003.4.7>

제26조 삭제 <2003.4.7>

제27조 삭제 <2003.4.7>

제28조 삭제 <2003.4.7>

제29조 삭제 <2003.4.7>

제30조 삭제 <2003.4.7>

제31조 삭제 <2003.4.7>

제32조 삭제 <2003.4.7>

제33조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4.7>

②농림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중앙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 7인 이내
 2.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 이내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중앙농정심의회를 대표하며, 중앙농정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회의) ①위원장은 중앙농정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농정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수당 등) 중앙농정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농정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농정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 (시·도농정심의회 구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농정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2.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 7인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 이내

제40조 (시·군·구농정심의회회의 구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농정심의회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2. 생산자단체의 장 10인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 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 이내

④시·군·구농정심의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농정심의회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농정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 (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회의 운영) ①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농정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42조 (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7.1>

1. 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산촌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 (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04.4.24>

부 칙 <제16646호, 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농산물가격유지법시행령
2.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규정
3. 농수산물수출진흥법시행령

제3조 (시지역중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역중 농촌지역을 고시할 때까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이 영에 의한 농촌지역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②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가목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농업인·임업인 및 어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전업어업인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어업외의 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에 상당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진 자
2.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인 자
3. 연간 20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

제5조의2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3, 제6조 내지 제15조 및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유화보완대책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를 "이를 정한다"로 한다.

3.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제29조·제43조·제44조, 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10, 제7장(제60조 내지 제68조)·제82조의2 및 제8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어업인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제73조제1항제7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⑤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시·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시·도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제50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설치자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별표 2의 시설구분란 제12호 및 제35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을 각각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으

로 하고, 동란 제15호 및 제18호중 "농업법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를 각각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으로 하며, 동란 제25호 및 제28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으로 한다.

⑥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⑦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3.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⑧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나목·라목·사목·자목·타목·하목 및 동항제2호 라목 단서·마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24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

⑨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9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유지법시행령·농수산물가격심의위원회규정·농수산물수출진

홍법시행령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같음 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 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생산자단체에의 가입) 법 제15조제4항(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염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⑩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 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으로 한다.

⑫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 <제17962호, 2003.4.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농업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 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과오납금 등의 반환 및 수납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내지 제32조,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8377호, 2004.4.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정 1999.12.31 농림부령 제1354호]

[개정 2004. 4.28 농림부령 제147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개정 2004.4.28>) ①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04.4.2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농정착 및 농업경영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2004.4.28>

③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4.28>

제3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전업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생산자단체에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의 지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중앙회의 장은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1>

제5조 삭제 <2003.4.11>

제6조 삭제 <2003.4.11>

제7조 삭제 <2003.4.11>

제8조 삭제 <2003.4.11>

제9조 삭제 <2003.4.11>

부 칙 <제1354호, 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수산물수출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전업어업인의 육성촉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업어업인육성대상자"라 한다)를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1. 어업을 주업으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업인

2. 전문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어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업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어업인육성대상자가 전업어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산물생산에 필요한 자금 기타 어업의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3조 (어업인후계자의 육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어촌청소년중 영어정착의욕이 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이하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어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의 수산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실업계학교의 수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당해연도에 졸업할 예정인 자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관에서 3월이상 전문영어기술훈련을 이수한 자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하여 영어자금을 융자·지원하며, 어업에 관한 기술·경영교육·수산물 판매알선 기타 어업인후계자가 전업어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어업인후계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와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교육훈련·지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 2·제4조·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8·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7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전업농업인·후계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③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④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⑤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획"을 "농업·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2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3)의납입자 보관용 뒤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중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1)의 납입자 보관용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납입자 보관용 뒷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⑥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수출진흥법시행규칙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437호, 2003.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및 징수대행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470호, 2004.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부록 2: 프랑스 농업법전 및 기본법 요지

1. 농업법전(Code Rural, 1791)

제1편 농촌공간의 정비와 시설

- 제1장 농촌공간의 개발과 정비
- 제2장 농사토지정비
- 제3장 토지조합
- 제4장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SAFER)
- 제5장 토지이용의 시설과 공사
- 제6장 농도 및 경영용 도로

제2편 자연의 보호

- 제1장 동식물의 보호
- 제2장 수렵
- 제3장 담수어업 및 양식자원의 관리
- 제4장 자연공간
- 제5장 자연보호에 관한 공통규정
- 제6장 해외 주의 특례

제3편 농업경영(1993.7.22 법률제93-934호)

- 제1장 일반규정
 - 제1절 농업활동
 - 제2절 통칙
 - 제1관 주 농업구조기본지침
 - 제2관 농업노동 및 농업자원의 보수수준
 - 제3관 농지가격의 공시
 - 제4관 자립하한면적

- 제5관 2노동단위 농업경영의 평균면적규모
- 제3절 조직
 - 제1관 주 농업방향설정위원회
 - 제2관 전국농업구조위원회
 - 제3관 전국농업경영구조개선센터(CNASEA)
- 제2장 농업경영의 법적 제형태
 - 제1절 개인책임의 가족경영
 - 제1관 가족경영의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 제1목 배우자간의 관계
 - 제2목 경영협력자
 - 제3목 급여연불의 노동계약
 - 제2관 가족경영의 이양
 - 제2절 농업토지집단(GFA) 및 농촌토지집단(GFR)
 - 제3절 농업공동경영집단(GAEC)
 - 제4절 유한책임 농업경영
 - 제5절 농업자간의 상호부조
 - 제6절 합병계약
 - 제7절 농업경영의 기타 형태
 - 제8절 해외 주 등의 특례
- 제3장 자립정책 및 구조·생산의 규제
 - 제1절 농업자립정책
 - 제2절 농업경영의 구조규제
 - 제3절 생산의 제한
- 제4장 농업경영의 재무(생략)
- 제5장 곤란한 상황에 있는 농업경영
 - 제1절 농업경영의 해산 정리 및 재판상의 갹생 및 청산
 - 제1관 동의정리
 - 제2관 재판상의 갹생 및 청산
 - 제3관 적용규정

제2절 경영전환 및 대체경영의 취득에 대한 원조

제1관 경영전환에 관한 원조

제3절 농업활동의 폐지

제6장 농업재해(생략)

제4편 농업임대차

제1장 정액임대차 및 분익임대차

제2장 가축임대차

제3장 해제조건부 차지계약

제4장 식재용 임차지계약

제5장 영구임대차

제6장 해외 주의 임대차관계 규칙의 특례

제7장 가정채원의 임대차

제8장 방목용지의 경영계약

제5편 농업직능조직

제1장 농업회의소

제2장 농업협동조합

제3장 농업의 집단적 이익조합

제4장 농업이익의 혼합조합

제5장 생산자집단 및 농업경제위원회

제6편 (개정중)

제7편 (개정중)

제8편 농업교육, 농업의 직업양성 및 농업개발

2. 1960년 농업기본법

- 1960년 기본법은 농정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

- 농업경영자의 지위를 그 친족이나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개선하여, 경영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의 제도화, 협업의 추진 등에 의한 구조정책을 추진하며
- 농촌인구감소 및 지역간 격차가 확대하는 것에 대처하고
- 생산과 시장 조직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정비하는 등이 주요내용

(1) 농업의 역할

- 프랑스의 경제발전 및 국민의 사회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의 역할 증대
- EEC에서의 프랑스의 지위향상
- 프랑스 농업의 총체적 무역수지의 균형유지
- 농업경영자 및 농업노동자의 사회적 지위향상
- 가족경영의 자연적·경제적 불리한 제조건을 보완

(2) 농업정책의 목표

- 기술진보의 발전보급으로 농업의 생산성향상
- 농산물의 판로 및 생산자 가격의 개선
- 토지자산의 보전·개량, 근대화의 확보
- 농업경영자 및 농업노동자에 대해 타산업종사자수준의 소득의 확보
- 농업경영자 및 농업노동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적 보호 실시
- 지역별 특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산방향의 설정 및 장려
- 노동과 자본의 완전고용이 가능한 가족경영구조의 촉진 및 원조

(3) 법률의 구성

제1장 방향설정의 일반원칙

제 1조 경제발전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

제 2조 농업정책의 목표

제 3조 농업정책의 통계적 기초

- 제 4조 생산목표
- 제 5조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의 불균형
- 제 6조 정부의 연차보고
- 제 7조 경영구조의 연구
- 제 8조 비자립경영

제2장 경영부담의 경감

- 제1절 상속
 - 제 9조 양도세의 지불연기
- 제2절 임금연기계약
 - 제10조 임금연기노동계약
- 제3절 농지임대차계약
 - 제11조 해약의 제한
 - 제12조 임차인이 행한 임차지 토지개발

제3장 토지정비

- 제13조 토지정비의 개념
- 제14조 소유자 또는 경영자의 집단
- 제15조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의 설립
- 제16조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에 관한 규정①
- 제17조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에 관한 규정②
- 제18조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에 관한 규정③

제4장 토지의 개발이용

- 제19조 미경작지 또는 경작포기지
- 제20조 농촌특별대책지구
- 제21조 농촌특별대책지구에 대한 원조
- 제22조 인구과잉지역의 농촌특별대책지구

제5장 생산 및 시장의 조직화

- 제23조 계약제도

- 제24조 전국곡물관계국의 개혁
- 제25조 농산물시장조정기금
- 제26조 관리위원회
- 제27조 섬유생산의 장려
- 제28조 수출
- 제29조 농산물의 규격통일
- 제30조 수입
- 제31조 농산물가격의 결정
- 제32조 경작계약
- 제33조 식육시장의 개선
- 제34조 공공도살장의 이용조건
- 제35조 도살장 시설계획
- 제36조 (농촌법전의 폐지조항)
- 제37조 품질라벨의 창설
- 제6장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회사
 - 제38조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명령의 개정
 - 제39조 농촌법전 제605조 제1항의 개정
- 제7장 잡칙
 - 제40조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혼합경제회사의 설립 장려
 - 제41조 농업재해보상제도
 - 제42조 해외 지역의 적용

3. 1980년 농업기본법

(1) 농업정책의 목적

- 국가의 경제적 및 인구동태상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불가결한 부문인 농업의 발전을 도모
- ‘균형의 유지’라는 목적을 지속하면서 프랑스 농업의 기반을 구성하는 가족경영에 대하여 부가가치의 증대에 불가결한 기술적·경제적

능력을 증진하여 농업자의 소득 및 생활조건을 개선

-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능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
- 농촌인구의 안정, 고용의 균형, 국토정비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장년 농업자의 취농 촉진
- 식량원조를 증대하여 세계의 기아해소에 노력

(2) 주요 정책수단

- 교육·직업훈련·시험연구 및 개발에 관한 정책
 - 농업·식품가공산업·농업에너지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 생산자재 및 수입원자재의 비용절감에 의한 국내농업 자립도 증대
 - 기술적·경제적·구조적 발전에 대한 전망 및 분석, 새로운 여건에 대한 적응조건을 명확히 제시
- 식량경제에 관한 정책
 - 소비자 및 식품가공산업의 수요에 대응하여 생산을 질적·양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생산방향을 설정
 - 농업자의 협동사업 및 협동조합형태나 사기업 형태에 의한 가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 생산자의 경제적 조직화를 강화
 - 원산지 표시제도의 특혜를 받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의 국내·국외시장을 개척
 - 적극적인 수출정책
 - 가공과정을 통한 부가가치생산을 증대
 - 농업부문의 에너지 및 원자재절감, 농업관련 에너지의 생산 및 농업경영의 부산물의 회수 및 유효이용
 - 생산·가공·유통 등 제분야에 걸친 경쟁정책
- 농업자와 타산업 종사자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회보장정책
- 토지의 경영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지정책
 - 지가 동향을 제어하고 상속에 따른 제부담을 경감하여 다수의 가족경영을 유지

- 농업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역사회전체의 필요성에 의한 토지이용 방향을 설정
- 농지의 농학적 생산능력의 증대
- 산악지역 및 조건불리지역에서 자립가능한 농업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 농촌정비 및 지역진흥정책
 - 농촌지역의 종합정비계획을 실시하여 농촌의 경제발전을 촉진
 -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국토자원의 보전, 자연적 균형의 유지 및 동식물 종의 보전을 위한 농업자의 참가를 장려

(3) 법률의 구성

제1장 농업정책의 방향설정

- 제 1조 농업정책의 목적
- 제 2조 주요 농업정책
- 제 3조 EEC관련

제2장 경제조항

- 제 4조 농업식량경제 고급회의
- 제 5조 방향설정에 관한 지역계획
- 제 6조 생산의 방향 설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
- 제 7조 농업경제위원회규정의 개정
- 제 8조 통합계약제도에 관한 개정
- 제 9조 식료품판매촉진기금
- 제10조-제14조 직능간 조직

제3장 사회조항

- 제15조-제17조 자영농업자사회보장제도의 개정
- 제18조 농업경영자의 은퇴연금
- 제19조-제21조 농업노동자의 조건개선
- 제22조-제23조 농업경영자와 그 배우자와의 관계

제4장 토지조항

- 제24조 부동산교환에 따른 등기수속
- 제25조 농지평가제도의 창설
- 제26조 과도기간의 기준 지가표
- 제27조 SAFER의 토지구입가격
- 제28조 토지정비위원회 및 구획정리
- 제29조 과대한 지가에 대한 용자제한
- 제30조 GFA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우선적 승계
- 제31조 우선적 승계의 대상범위
- 제32조 회사형태로 경영되는 자산의 우선적 승계
- 제33조 장기임대차에 의한 농업경영의 우선적 승계
- 제34조 공동상속인간의 임대차
- 제35조 소유권에 의한 우선적 승계
- 제36조 분할의 연기명령
- 제37조 소유권에 의한 당연한 우선적 승계권
- 제38조 우산분할의 연불임금
- 제39조 GFA의 외부자본도입
- 제40조—제43조 GAEC
- 제44조 포도주법전의 일부개정
- 제45조 장명의 변경
- 제46조 규제목적과 시도농업구조기본계획
- 제47조 경영의 승인
- 제48조 농업구조위원회
- 제49조 최저취농면적 등의 결정방법
- 제50조 경영승인에 관한 절차
- 제51조 경영승인과 임대차계약과의 관계
- 제52조 규제위반자에 대한 최고와 서류송검
- 제53조 규제위반자에 대한 공적 원조의 금지
- 제54조 경영구조규제에 관한 벌칙

- 제55조 경영구조규제의 시효
- 제56조 경영구조규제의 시행일
- 제57조 임대차규제의 대상
- 제58조 필지별 적용의 해석 규정
- 제59조 갱신가능한 연차별 임대차계약
- 제60조 재판소로의 직접신청
- 제61조 해약권 규정의 정비
- 제62조 장기임대차로의 전환
- 제63조 지상물 매수조건부 임대차
- 제64조 평생임대차
- 제65조 SAFER의 선매권
- 제66조 SAFER의 토지양도
- 제67조 저리용자에 의한 토지취득자의 보조금반환
- 제68조 임차인 선매권에 대한 제한
- 제69조 FASASA(농업구조개선사회활동기금)의 연장
- 제70조 이농연차보상금과 이농중신 보상금
- 제71조 이농보상금 수급을 위한 임대차 해약
- 제5장 농촌정비
 - 제72조 중점시책
 - 제73조 농지도의 작성
 - 제74조 농업담당행정기관의 도시계획에의 참여
 - 제75조 농업으로 인한 공해
 - 제76조 농촌정비·구획정리 증진사업
 - 제77조 SAFER의 토지소유기간의 예외
 - 제78조 농업경영구조에 악영향을 주는 수용
 - 제79조 농지수용의 조건
- 제6장 잡칙
 - 제80조 예산조치
 - 제81조 3년 단위의 보고서

제82조-제83조 법률의 적용방법에 관한 시행령

4. 1995년 농업기본법

(1) 농업정책의 목적

- 국가경제 및 국토·사회의 균형에 필요한 농업의 근대화와 발전을 보증
- CAP의 개혁 및 새로운 국제적 상황에 대한 농업의 적응력을 제고
- 시장수요에 대한 적응력과 경쟁력을 보증하고, 수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부문 및 농업관련 식품기업, 농촌공업을 향상
- 목축·수렵·어업 등의 농촌활동을 고려하고 환경보전을 존중하면서 국토의 정비개발 및 농촌공간의 경제적·사회적 균형에 공헌
- 지원대상국가의 농업이익을 존중하면서 식량원조를 증대하고 세계적인 기아해소에 참가

(2) 농정의 방향

- 농업활동의 특수성과 경영체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또 기업경제에 적응하는 법적·세제상·사회적 틀을 농업경영체에 제공
- 경영체의 세대교체를 촉진. 특히 청년의 취농촉진정책을 추진
- 청년농업자 및 기타 농업종사자에게 취농을 촉진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확충
- 농업자의 개인적 주도과 책임이 유지되는 개인경영 또는 법인경영 등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
- 농업세제와 사회보장부담의 적용 등에 의하여 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
- 전후방 관련산업의 서로 다른 주체간의 균형과 생산·가공·유통의 시장수요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산업조직을 정비
- 농산물의 비식량이용을 촉진
- 농산물의 품질과 원산지표시에 관한 정책을 개선

- 농업법전 제L113-1조 규정에 의하여 산악지역의 농업진흥을 도모
- 농업경영자, 농업노동자 및 은퇴 농업경영자의 소득과 생활조건을 개선
- 농촌공간의 유지 지원을 통하여 농업이 공간유지 및 서비스에 미치는 기능을 평가
- 생산된 부(富)의 공평한 배분을 위하여 농업·농업관련산업·공업·유통부문간에 균형관계를 구축

(3) 법률의 구성

제1조 1980년 농업기본법 제1조의 개정

제1장 농업생산 및 식품산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규정

제 2조 「1980년 농업기본법」의 개정(제4조)

제 3조 「농촌법전」의 개정

제 4조-제 5조 「농업부문 개입기관의 설립과 시장조직에 관한 법률」(1982)의 개정

제 6조 「산악개발 및 보호에 관한 법률」(1985)의 개정

제 7조 「농업 및 업자간 조직에 관한 법률」(1975)의 개정

제 8조-제 9조 「가격의 자유와 경쟁에 관한 명령」(1986)의 개정

제10조-제14조 「농촌법전」의 개정

제15조-제16조 특정농산물의 생산억제

제2장 농업경영체에 관한 규정

제1절 일반규정

제17조 영농활동에 관한 보고서의 국회제출

제18조 토지관련세제에 관한 보고서제출

제19조-제20조 「일반조세법전」의 개정

제21조 해외지역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

제2절 법인의 설립

제22조-제27조 「농촌법전」의 추가

- 제28조-제31조 「일반조세법전」의 개정
- 제32조 「농촌법전」의 개정
- 제3절 취농
 - 제33조 「농촌법전」의 개정
 - 제34조 「일반조세법전」의 개정
 - 제35조 「농업사회보장부담 및 농업조기은퇴제도에 관한 법률」(1990)의 개정
 - 제36조 「1982년 재정법」의 개정
 - 제37조 국회에 조세경감에 관한 보고서제출
 - 제38조-제39조 「일반조세법전」의 개정
- 제4절 취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
 - 제40조-제41조 「일반조세법전」의 개정
 - 제42조 「농촌법전」 및 「사회보장법전」의 개정
 - 제43조 「사회질서관련조치에 관한 법률」(1993)의 개정
 - 제44조 「농촌법전」의 개정
 - 제45조 주종사자의 부업제한
 - 제46조 국회에 농업경영자의 배우자 및 가족의 지위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제3장 농촌공간의 정비와 유지에 관한 규정
 - 제1절 조합과 집단
 - 제47조-제50조 농촌법전의 개정
 - 제51조 공공이용을 위한 수용법전의 개정
 - 제52조 농촌법전의 개정
 - 제53조 산림의 관리, 활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985)의 개정
 - 제2절 토지정비
 - 제54조-제56조 농촌법전의 개정
 - 제57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정시설에 관한 법률(1976)의 개정
- 제4장 농업고용의 발전에 관한 규정
 - 제1절 고용자집단과 대행사업의 발전

- 제58조 사회질서 관련 제조치에 관한 법률(1989)의 개정
- 제59조-제60조 일반조세법전의 개정
- 제61조 노동법전의 개정
- 제2절 농업노동자의 사회보장부담
 - 제62조 농촌법전의 개정
 - 제63조 노동법전의 개정
 - 제64조 농촌법전의 개정
- 제3절 노동규제
 - 제65조-제66조 농촌법전의 개정
- 제5장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 제1절 농업경영자의 사회보장부담
 - 제67조-제70조 농촌법전의 개정
 - 제2절 노동자가 아닌 농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규정
 - 제71조-제72조 농촌법전의 개정
 - 제73조 사회보장법전의 개정
 - 제74조 일반조세법전의 개정
 - 제75조 원산지호칭보호에 관한 법률(1919)의 개정
 - 제76조 농촌법전의 개정
 - 제77조 농업위원회선거관련
 - 제78조 비건축토지소유세의 감면
 - 제79조 농업경영의 경제사회환경의 적응에 관한 법률(1988)의 개정
 - 제80조 관세법전, 일반조세법전의 개정
 - 제81조 천연기념물, 예술, 역사, 과학, 전설 및 경관상 특징이 있는 장소의 보호를 재편하기 위한 법률(1930)의 개정

부록 2: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전문

식료·농업·농촌기본법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16호

목 차

- 제1장 총칙(제1조-제14조)
- 제2장 기본적 정책
 - 제1절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제15조)
 - 제2절 식료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정책(제16조-제20조)
 - 제3절 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정책(제21조-제33조)
 - 제4절 농촌의 진흥에 관한 정책(제34조-제36조)
- 제3장 행정기관 및 단체(제37조·제38조)
- 제4장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제39조-제43조)
-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기본 계획 및 그 실현을 도모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등을 정하여,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료의 안정공급 확보) ①식료는 인간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것 이고, 건강하고 충실한 생활의 기초로서 중요한 것임을 감안하여, 장

래에도 양질의 식료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②국민에 대한 식료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는, 세계의 식료수급 및 무역이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과 수입 및 비축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식료공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면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도모함으로써 고도화하고, 또 다양화하는 국민의 수요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④국민이 최소한도로 필요로 하는 식료는 흉작, 수입중단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급이 상당 기간동안 긴박하거나, 긴박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3조(다원적 기능의 발휘) 국토보전, 수원함양, 자연환경 보전, 양호한 경관형성, 문화 전승 등 농촌에서 농업생산활동을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식료, 기타 농산물의 공급기능, 다면에 걸친 기능(이하 '다원적 기능'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감안하여, 장래에도 적절하고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

제4조(농업의 지속적 발전) 농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지는 식료, 기타 농산물 공급기능 및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농지·농업용수·기타 농업자원 및 농업의 경영주체를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바람직한 농업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농업의 자연순환기능(농업생산활동이 자연계에서 생물을 개재하는 물질의 순환에 의존하고, 이것을 촉진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 증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의 진흥) 농촌에 대해서는, 농업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생활

의 장으로서 농업이 경영됨으로써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인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농업이 가지는 식료, 기타 농산물의 공급기능 및 다원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조건 정비 및 생활환경의 정비, 기타 복지향상에 의해, 그 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수산업 및 임업에 대한 배려)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을 강구할 때에는, 수산업 및 임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감안하여, 그 진흥에 필요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정하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이라 한다.)에 따라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②국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기본이념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하여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근거해서,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 조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제9조(농업인 등의 노력)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는 농업 및 이에 관련하는 활동을 이행할 때, 기본이념의 실현에 주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의 노력) 식품산업의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을 행할 때,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에 대한 식료공급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인 등의 노력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을 강구할 때, 농업인 및 농업에 관련된 단체 및 식품산업의 사업자가 하는 자주적인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련된 이해를 넓히고, 식료의 소비생활 향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3조(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련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연차보고 등) ①정부는 매년 국회에 식료, 농업 및 농촌의 동향과 함께 정부가 식료, 농업 및 농촌에 대하여 강구한 정책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매년 전향 보고에 관한 식료, 농업 및 농촌의 동향을 고려하여 강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명확히 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전향에 강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명확히 한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 의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정책

제1절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제15조 ①정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

1.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2. 식료자급률 목표

3.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정책

4. 전 3호에서 언급하는 것 이외에,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전항 제2호의 식료자급률 목표는 국내 농업생산 및 식료소비에 관한 지침으로서, 농업인 기타 관계자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중 농촌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⑦정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을 둘러싼 정세변화를 감안하고,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 효과에 관한 평가를 근거로, 대략 5년 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⑧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절 식료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정책

제16조(식료소비에 관한 정책의 확충) ①국가는 식료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의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의 고도화, 식품표시의 적정화,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식료소비의 개선 및 농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에 관한 지령 수립, 식료소비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제공,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가는 식품산업이 식료공급에 있어서 행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으로의 부하경감 및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배려하면서, 사업기반의 강화, 농업과의 연계추진, 유통 합리화,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 ①국가는 농산물에 대해, 국내생산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농산물 수입에 의해서 이것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산물 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관세율 조정, 수입 제한,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조사의 충실, 정보 제공, 보급선전 강화,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유사시의 식료안전보장) 국가는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국민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식료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식료 증산, 유통 제한,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협력의 추진) 국가는 장기적으로 세계 식료수급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도상지역의 농업 및 농촌의 진흥에 관한 기술협력 및 자금협력, 이러한 지역에 대한 식료원조, 기타 국제협력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정책

제21조(바람직한 농업구조의 확립) 국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

영을 육성하고, 이러한 농업경영이 농업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농의 유형 및 지역 특성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추진, 농업경영의 규모확대, 기타 농업경영기반의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전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 의한 농업경영의 추진) 국가는 전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 기타 경영의욕이 있는 농업인이 창의력을 살린 농업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경영관리의 합리화, 기타 경영발전 및 그 원활한 승계에 기여하는 조건을 정비하여, 가족농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농지의 확보 및 효율적인 이용) 국가는 국내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지확보 및 그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로서 이용해야 할 토지의 농업적 이용확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농지이용의 집적, 농지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국가는 양호한 영농조건을 갖춘 농지 및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이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면서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취지로 하여, 농지구획의 확대, 논외범용화, 농업용 용배수시설 기능의 유지 증진, 기타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인재의 육성 및 확보) ①국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담당해야 할 인재의 육성 및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자의 농업기술 및 경영관리능력의 향상, 신규로 취농하려는 자에 대한 농업의

기술 및 경영방법의 습득촉진,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민이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에 관한 교육진흥,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여성의 참여 촉진) 국가는 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여성의 농업경영에서의 역할을 적절히 평가하는 동시에, 여성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농업경영 및 이에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고령농업자의 활동 촉진) 국가는 지역의 농업에서 고령농업자의 역할분담 및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 및 능력에 따라서, 보람을 가지고 농업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고령농업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생산조직의 활동 촉진) 국가는 지역의 농업에서 효율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락을 기초로 한 농업인의 조직, 기타 농업생산활동을 공동으로 행하는 농업인 조직, 위탁을 받아 농작업을 행하는 조직 등의 활동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국가는 농업 및 식품의 가공과 유통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술의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화, 국가 및 시도부현 시험연구기관, 대학, 민간 등의 연계강화, 지역의 특성에 따른 농업에 관한 기술 보급사업의 추진,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농산물의 가격 형성과 경영 안정) ①국가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농업생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이 수급사정 및 품질평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형성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농산물 가격의 현저한 변동이, 육성해야 할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농업재해에 의한 손실 보전) 국가는 재해에 의해 농업의 재생산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에 의한 손실의 합리적인 보전,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자연순환기능의 유지 증진) 국가는 농업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농약 및 비료의 적절한 사용, 가축배설물 등의 효율적인 이용에 의한 지력증진,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농업자재의 생산 및 유통의 합리화) 국가는 농업경영에 있어서 농업자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농업자재의 생산 및 유통의 합리화 촉진,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절 농촌 진흥에 관한 정책

제34조(농촌의 종합적 진흥) ①국가는 농촌에서의 토지 농업상의 이용과 기타 이용과의 조정에 유의하여, 농업의 진흥, 기타 농촌의 종합적 진흥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관이 뛰어나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교통·정보통신·위생·교육·문화 등 생활환경의 정비, 기타 복지향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중산간지역 등의 진흥) ①국가는 산간지 및 그 주변지역, 기타 지세 등 지리적 조건이 나빠서 농업의 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이하

‘중산간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신규작물의 도입, 지역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한 농업, 기타 산업의 진흥에 의한 취업기회의 증대, 생활환경의 정비에 의한 정주 촉진,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중산간지역 등에서 적절한 농업생산활동이 계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농업의 생산조건에 관한 불리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을 행하여, 특히 다원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①국가는 국민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촉진, 시민농원의 추진,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도시 및 그 주변의 농업에 대하여 소비지에 가까운 특성을 살리고, 도시주민의 수요에 따른 농업생산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기관 및 단체

제37조(행정조직의 정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을 강구할 때, 서로 협력하고, 행정조직의 정비, 행정운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단체의 재편 정비) 국가는 기본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단체의 효율적인 재편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

제39조(설치) 농림수산성에,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0조(권한) ①심의회는 이 법률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총리·농림수산장관 또는 관계 부처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법률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②심의회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총리, 농림수산장관 또는 관계 부처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1조(조직) ①심의회는 위원 15명 이내로 조직한다.

②위원은 전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관하여 학식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농림수산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총리가 임명한다.

③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심의회의 직원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는, 농림수산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총리가 임명한다.

제42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의회는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의견 개진, 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위임규정)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본법의 폐지) 농업기본법(1961년 법률 제127호)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법률의 시행시, 1999년에 전조 규정에 의한 폐지

전의 농업기본법(이하 ‘구기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보고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항에 의한 보고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법률의 시행전에 구기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보고가 국회에 제출된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예에 의한 구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항의 보고가 국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러한 보고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보고서로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법률의 시행시, 1999년에 구기본법 제7조의 문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 문서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이 법률의 시행전에 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동조의 문서가 국회에 제출된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의한 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동조의 문서가 국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러한 문서는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동항의 문서로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토지개량법의 일부 개정) 토지개량법(1949년 법률 제19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 제1항 중, ‘농정심의회’를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로, ‘듣고서’를 ‘청취하여’로 개정한다.

제5조(감미자원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감미자원특별조치법(1964년 법률 제4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삭제

제13조 제2항 제1호 중, ‘제3조 및 농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된 감미자원작물에 대한 장기전망 등에서 추정된다.’를 삭제한다.

제6조(국유 임야의 활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국유 임야의 활용에 관한 법률(1971년 법률 제10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농업구조 개선” 및’을 “농업구조 개선”이란 농업 경영의 규모 확대, 농지의 집단화, 가축의 도입, 기계화, 기타 농지보유의 합리화 및 농업경영의 근대화를 말한다.’로 개정하고, ‘각각, 농업기본법(1961년 법률 제127호) 제2조 제1항 제3호의 농업구조 개선 및’을 삭제한다.

참 고 문 헌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기본법안 심사보고서”, 1998.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1.
- 김정호 외, 「외국의 농업투융자제도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12.
- 김정호, 「농업·농촌발전계획과 중기계획 수립 방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발표자료, 2002.8.
- 김태곤,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개요」(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경토론회자료), 1999.
- _____, 「미국 2002년 농업법 - 특징, 문제점, 시사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발표자료, 2002.6.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2002.12.
-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 2004.2.
- 농림부,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10.
- 농림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 50년사, 2000.12.
- 농림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1998.
- 농림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정부 농정백서; 농업 농촌의 변화와 대응, 2003.2.
- 농정연구센터, 「참여정부의 농업정책 전개방향」(제11회 연례심포지엄 주제발표 논문집), 2003.6.
- 박진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방향에 관하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8.
- _____, “참여정부의 농정 패러다임”, 「계간 농정연구」 2003 봄호, 농정연구센터, 2003.4.
- 배민식, 「농업·농촌기본법안의 논점과 과제」, 국회도서관 간행물(현안분석-179), 국회도서관, 1998.

- 오현석, 「프랑스 농업구조정책의 전개와 98년 농업기본법 개정안의 함축」, 사단법인 농정연구포럼 제62회 월례세미나 보고서, 1998.8.
- 이영기, “농업·농촌기본법에 나타난 농정 연구(Ⅰ) -농정 목표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농업정책학회, 2003.6.
- _____, “농업·농촌기본법에 나타난 농정 연구(Ⅱ) -주요 농업·농촌 시책의 검토”,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논집』, 동아대학교, 2003.12.
- 이정환 외,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12.
- 정영일, “선진제국의 농정추세와 한국농정 전환의 과제: 도하개발라운드 농업협상과 관련하여”, 『경제논집』, 서울대 경제연구소, 200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기본법 제정」(공청회 결과보고서), 1998.1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5」, 2005.2.
- 황수철, “식료정책의 주요과제”, 『계간 농정연구』 2003 봄호, 농정연구센터, 2003.4.
- 황적인 편, 「농업법」, 삼지원, 1999.
- 伊藤正人, 「フランス農業近代化法見直しについて」, 農林水産政策研究所 세미나 자료, 2005.1.

C2005-21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찍은날 2005. 9. 6 펴낸날 2005. 9. 6

발행인 허길행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동양문화인쇄포럼 Tel. 2242-7120(대)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